



2013년도 울주군 지방재정공시



울 주 군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7

2. 살림규모

세입결산	9
세출결산	12
중기지방재정계획	15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6
재정자주도	17
재정력지수	18
통합재정수지	19

4.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21
지자체 부채	23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24
일시차입금	25
보증채무	26
지방공기업 부채	27

5. 채권

채권 현황	28
-------------	----

6.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0
청사관리운영	32
공무원 인건비	33
업무추진비	35

국외여비집행현황	36
지방의회경비	39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41
맞춤형 복지비	42
연말지출비율	4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46

7. 복지 ·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48
민간단체보조금	49
행사축제경비	51

8.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성과분석결과)	53
공유재산 및 물품	56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59
지방공기업 현황	61

9. 재정성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62
재정분석 · 진단결과	63
재정건전화 계획 · 이행 현황	67
지방세지출예산	68
성인지예산	70
주민참여예산	71
원가회계정보	72

10. 감사 및 평가결과

외부 감사결과	87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88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89
민간투자사업	90
지방채사업	91

12. 특수공시

오영수 문학관 건립	93
울주민속박물관 건립	95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97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99
울주 통합관제센터 구축	10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03
작수천 명소화 수변 야영장사업	105
태화강생태관 건립	108
울주범서도서관 건립	110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112

13. 별첨자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7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129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134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139
개별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140

<참고자료>

재정공시 관련 법규	153
용어해설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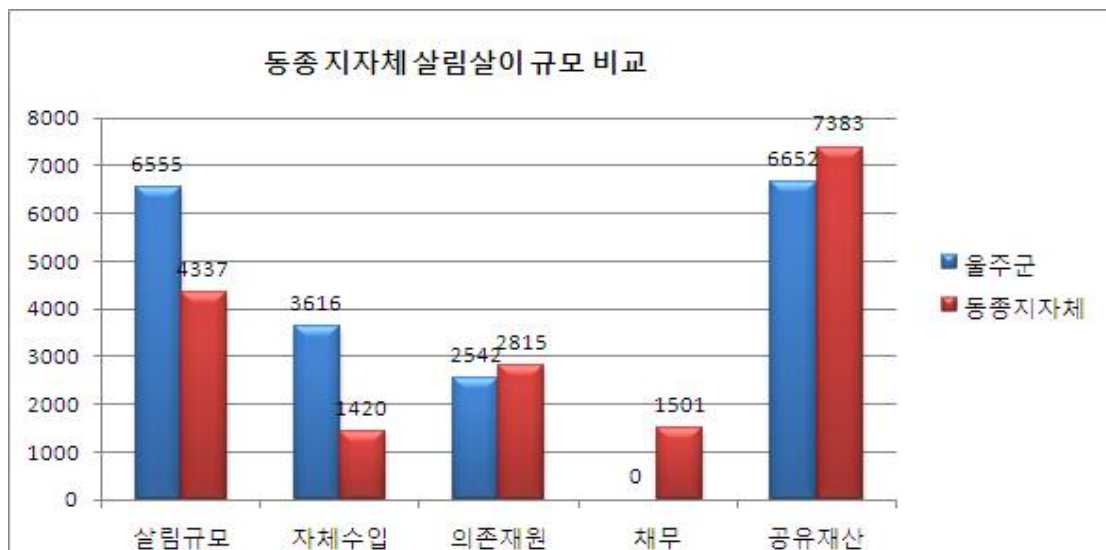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공시

울주군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울주군수(인)

- ◆ 우리 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555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16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4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542억원입니다.
 - 지방채는 없으며, 예치금회수는 394억원입니다.
-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2년도에 청량면 문죽리 833-8번지 등 1,740건(913억원)이 증가하고, 온산읍 원산리 1155-3번지 등 981건(173억원)이 감소하여, 현재는 총 6,55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337억원) 보다 2,21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420억원)보다 2,196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15억원)보다 273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7,383억원)과 비교하여 831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군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8.95%이며(동종단체 평균 17.28%),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92%(동종단체 평균 63.58%)입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하여 살림규모가 전국 최고수준이고,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으며 재정자주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또, 채무가 없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울주군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서기보 조정은

전화번호 : 052-229-7035

이 메 일 : coocllc@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울주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655,497	535,916	119,581	433,738	396,738	37,001
	세 출	500,334	415,192	85,143	331,842	312,050	19,791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8.95	48.25	0.7	17.28	18.19	△0.91
	재정자주도	68.92	67.68	1.24	63.58	63.3	0.28
	재정력지수	74.71	74.8	△0.09	21.36	22.56	△1.2
	통합재정수지	14,424	21,109	△6,685	3,720	2,724	996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15,014	18,959	△3,946
	지자체 부채	11,220	8,227	2,993	31,596	33,350	△1,75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861	714	148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025	792	233
	지방공기업 부채	40	23	17	4,578	3,592	986
④ 채권	채권 현재액	3,594	3,631	△37	6,862	7,175	△31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4,020	3,929	91	2,411	2,376	36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8,819	44,962	3,856	37,030	34,910	2,120
	업무추진비	529	521	8	358	351	6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583	582	0	400	402	△2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278	1,244	35	760	726	34
	연말지출비율	33,624	20,370	13,254	15,827	15,581	247
	지방세세외수입 채납액	22,839	22,626	214	5,497	5,382	115

재정운영 결과		울주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04,200	92,758	11,442	45,771	44,516	1,255	
	민간단체 보조금	6,965	5,466	1,499	8,751	8,513	238	
	행사축제경비	3,715	3,791	△76	3,227	2,880	347	
⑦ 기금, 지방 공 기업 등	기금 현재액	58,594	39,545	19,049	10,945	10,478	467	
	공유재산 현재액	655,164	581,163	74,001	738,297	670,204	68,093	
	물품 현재액	3,789	2,531	1,258	5,310	5,879	△569	
	출지출연금 집행액	5,323	5,020	303	1,940	1,800	139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 무 보 고 서	자산총계	2,364,674	2,224,928	139,746	1,724,434	1,635,610	88,824
		부채총계	11,220	8,227	2,993	31,596	33,350	△1,754
		수익총계	472,941	395,655	77,287	321,825	292,877	28,947
		비용총계	336,398	298,355	38,043	229,138	214,010	15,128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22,608	20,519	2,089	4,588	4,447	14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5,497	562,790	0	32,495	6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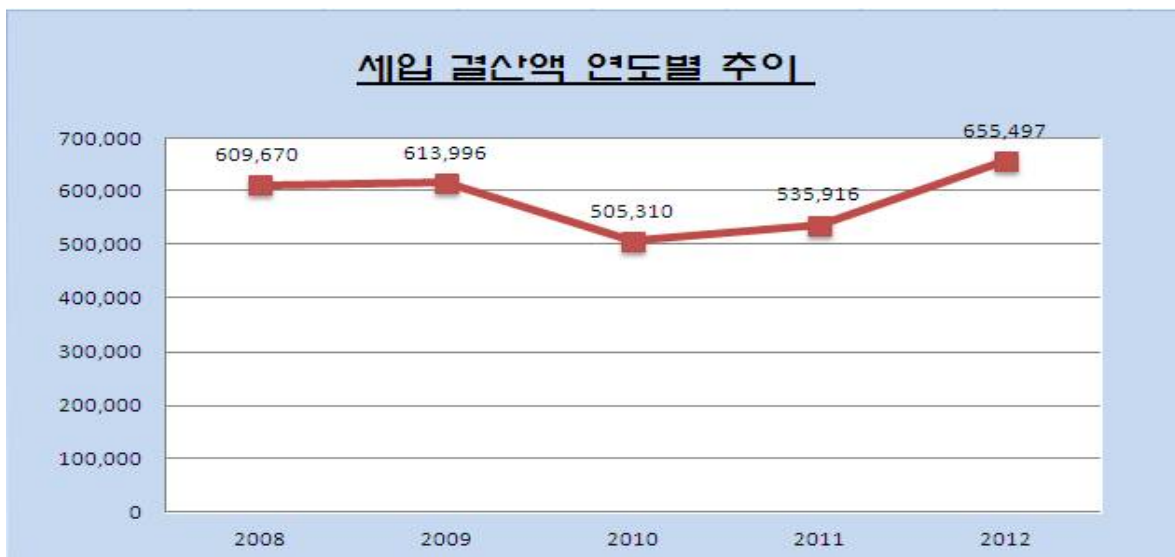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울주군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60억원에서 2012년 6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09,670	613,996	505,310	535,916	655,49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연 도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합 계	518,117	100%	515,609	100%	422,363	100%	447,285	100%	562,790	100%
지 방 세	171,848	33.17%	143,799	27.89%	134,697	31.89%	155,074	34.67%	195,281	34.70%
세외수입	160,133	30.91%	169,235	32.82%	89,118	21.10%	79,733	17.83%	119,783	21.28%
지방교부세	63,605	12.28%	60,809	11.79%	57,632	13.65%	57,570	12.87%	69,805	12.4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0,181	3.89%	20,812	4.04%	20,233	4.79%	20,401	4.56%	27,206	4.83%
보 조 금	102,351	19.75%	120,954	23.46%	120,682	28.57%	134,507	30.07%	150,716	26.78%
지방채·예치금회수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2009년도에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46%(22,990백만원) 대폭 증가 하였으나,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세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80,117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이 작년대비 28,455백만원 감소, 이월금이 47,359백만원 감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정 조기집행 실시로 인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이월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 2011년에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2010년 세입규모에서 약6% 증가(24,922 백만원)되었습니다.
- 2012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26%증가한 562,790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지방세에 속한 지방소득세 세입결산액이 2011년도 70,818백만원에서 2012년도에 101,517백만원으로 약 44%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관내 유화·비철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어 전체 법인의 매출액 증가(법인세분)와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개인 소득이 증대(소득세분)됨에 따라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지방소득세가 대 폭 증가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171,848,202	143,799,451	134,697,258	155,073,766	195,281,035
인구수	191,687	195,399	201,000	204,680	207,84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97	736	670	758	940

▶ 인구수는 2012.12.31기준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0,334	420,186	0	19,937	6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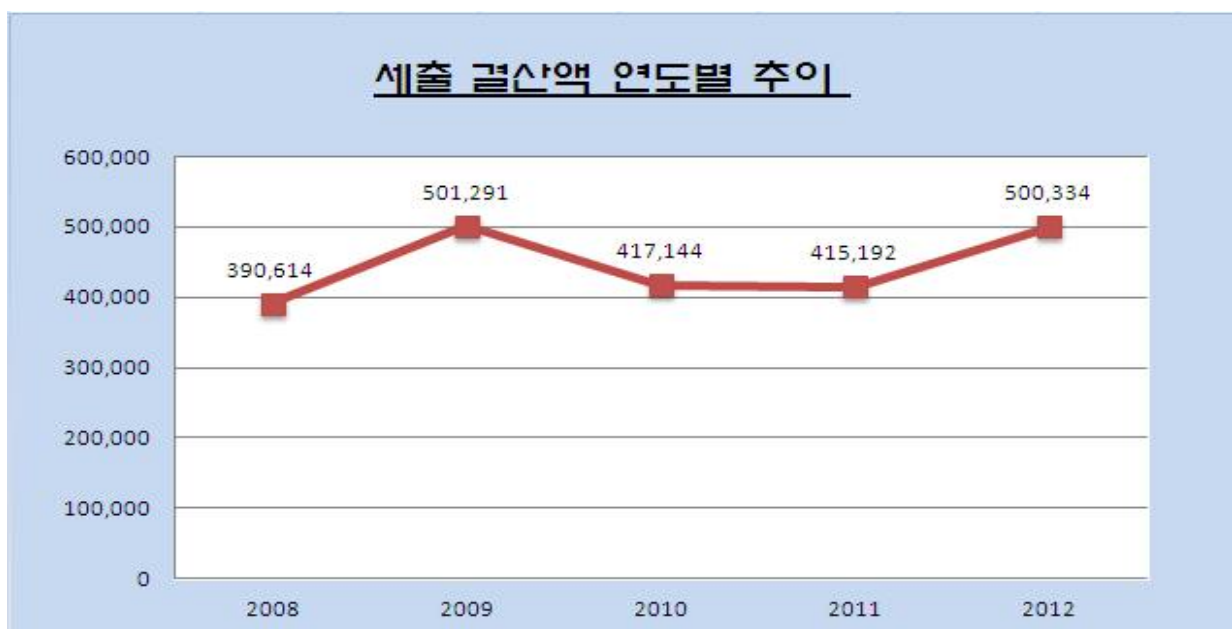
-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3,906억원에서 2012년 5,00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90,614	501,291	417,144	415,192	500,334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회계별											
합 계		368,312	100%	441,619	100%	370,620	100%	349,538	100%	420,186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33,192	9.0%	38,374	8.7%	33,736	9.1%	28,864	8.3%	46,007	11.0%
	공공질서안전	3,688	1.0%	8,571	1.9%	7,839	2.1%	3,258	0.9%	4,058	1.0%
	교 육	1,910	0.5%	5,161	1.2%	7,671	2.1%	7,825	2.2%	8,823	2.1%
	문화 및 관광	26,822	7.3%	39,262	8.9%	17,677	4.8%	20,424	5.8%	23,812	5.7%
	환경보호	25,824	7.0%	29,803	6.8%	29,302	7.9%	19,690	5.6%	23,006	5.5%
	사회복지	67,859	18.4%	92,001	20.8%	89,508	24.2%	92,758	26.5%	104,200	24.8%
	보 건	7,117	1.9%	9,208	2.1%	6,999	1.9%	7,094	2.0%	7,088	1.7%
	농림해양수산	58,932	16.0%	60,637	13.7%	48,181	13.0%	51,395	14.7%	56,794	13.5%
	산업·중소기업	1,376	0.4%	3,203	0.7%	6,244	1.7%	5,036	1.4%	5,106	1.2%
	수송 및 교통	58,203	15.8%	72,187	16.4%	56,307	15.2%	41,668	11.9%	61,876	14.7%
	국토·지역개발	38,317	10.4%	38,508	8.7%	21,307	5.8%	22,250	6.4%	26,167	6.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45,072	12.2%	44,703	10.1%	45,849	12.4%	49,276	14.1%	53,248	12.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68,311,992	441,618,956	370,619,921	349,538,156	420,185,522
인구수	191,687	195,399	201,000	204,680	207,840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1,921	2,260	1,844	1,708	2,022





- 2008~2012년 세출 분야 중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복지」입니다.
- 2009년도 세출규모는 2008년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441,619백만원 이며, 「공공질서·안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 2010년도 세출규모는 2009년도에 비해 70,999백만원 감소하였고, 그 중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규모의 45%정도로 축소 되었습니다.
- 2011년도 세출규모는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가장 큰 감 소율을 보인 분야는 2배 이상 감소된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 2012년도 세출규모는 2011년에 비해 70,648백만원이 증가하여 420,186 백만원입니다. 군민의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 향상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에서 약60%(17,143백만원) 증가되었고 「수 송 및 교통」에서 약 48%(20,20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485,928	486,579	505,030	518,150	530,262	2,525,949	2.20%
자 체 수 입	238,623	231,515	239,379	248,775	257,032	1,215,324	1.90%
의 존 수 입	247,305	255,064	265,651	269,375	273,229	1,310,624	2.5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485,928	486,579	505,030	518,150	530,262	2,525,949	2.20%
경 상 지 출	95,358	93,167	96,040	94,364	98,736	477,665	0.90%
사 업 수 요	390,570	393,412	408,990	423,787	431,526	2,048,285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는 48.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8.95%	485,782	237,801	247,98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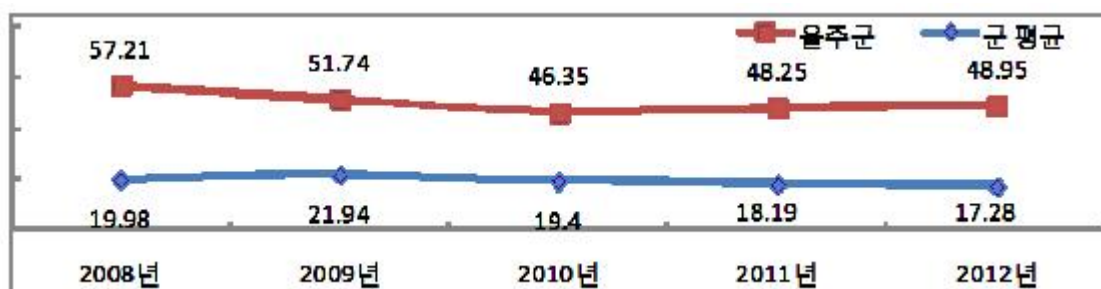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57.21%	51.74%	46.35%	48.25%	48.9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전체 세입 485,782백만원 중 자체세입은 237,80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8.95%, 의존재원은 247,981백만원으로 5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동종 지자체에 비해 인구, 법인이 많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이 높은 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며, 동종 지자체(군) 평균인 17.2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울주군의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주도는 68.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 C+ 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8.92%	485,782	334,812	150,97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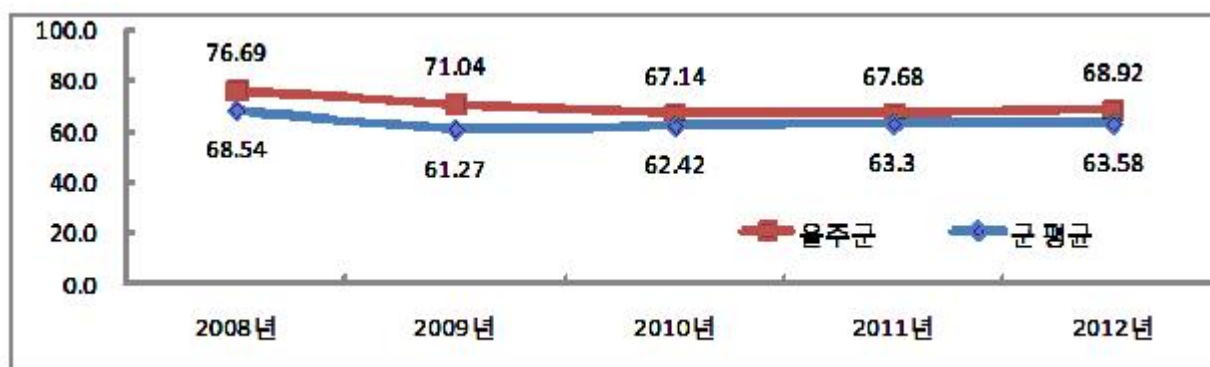
-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76.69%	71.04%	67.14%	67.68%	68.9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전체 세입 485,782백만원 중 자주재원은 334,81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8.92%, 보조금은 150,970백만원으로 3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울주군의 재정력지수는 74.7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74.71%	271,739	20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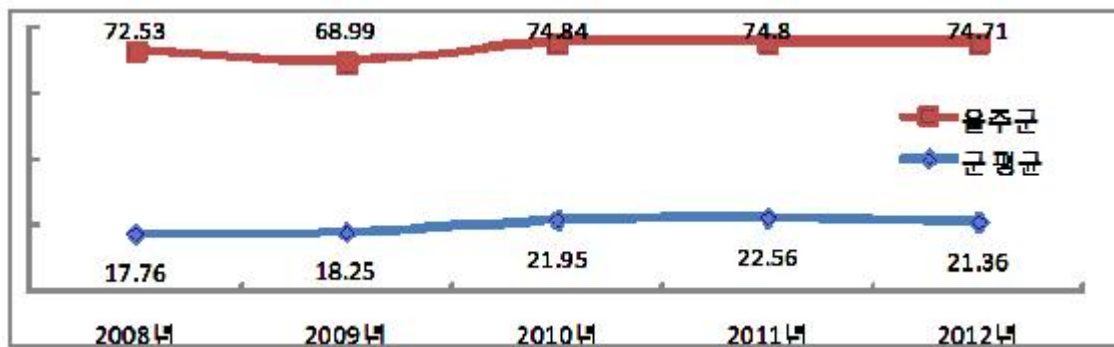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72.53%	68.99%	74.84%	74.80%	74.7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우리군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지자체에 비해 3~4배 높은 재정력지수를 나타냄으로써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울주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F$	통합재정 수지 2 $I=G-(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2,707	494,539	384	1,196	811	37,067	495,351	-22,644	14,423
일반회계	462,423	462,642	79	0	-79	19,469	462,562	-139	19,330
기타 특별회계	8,762	25,647	184	1,046	861	17,598	26,509	-17,746	-14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522	6,250	120	150	30	0	6,280	-4,758	-4,758

-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80,159	-77,494	-47,858	-32,463	-22,644
통합재정수지 2	6,160	9,925	7,870	21,108	14,423



우리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가 2008년에 6,160백만원, 2009년에 9,925백만원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에 ‘통합재정수지2’의 수치가 낮아졌는데,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잉여금, 이월금의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그 후 2011년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도 증가되었습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울주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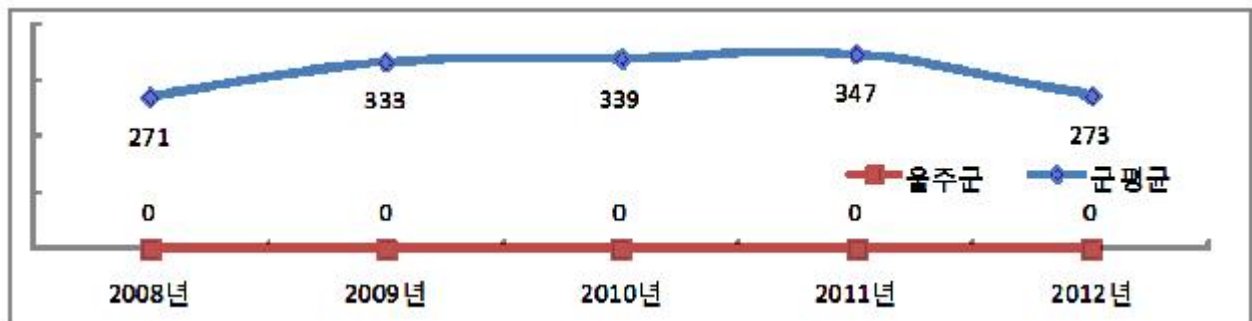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해	당	없	음	207,840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해	당	없	음
인구수(명)					
주민1인당채무(천원)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8,800	19,500	27,500	23,700	17,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2012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7,70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군에서 실제 발행된 지방채는 없습니다.

우리 군이 1인당 채무가 없는 것에 비해 동종 지자체 1인당 채무평균액은 273천 원임을 비교해 볼 때 울주군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울주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1,220	8,227	2,993	
자산(B)	2,364,674	2,224,928	139,74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47	0.37	0.1	

-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 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주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사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BTO 사업								

●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울주군이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90,614	478,068	385,693	375,737	441,74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4-6. 지방공기업 부채

□ 우리 울주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40	100	40	23	100	23
공단	소 계	40	100	40	23	100	23
	울주군시설관리 공단	40	100	40	23	100	23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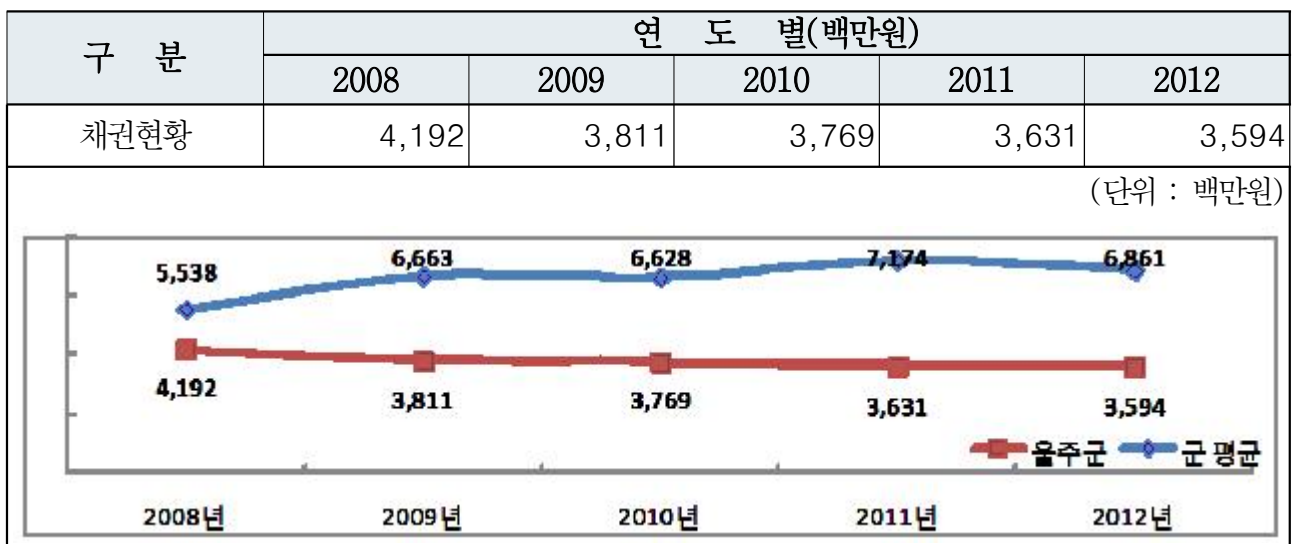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631	-38	564	603	3,594
일 반 회 계		2,906	-9	80	89	2,897
특 별 회 계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0	0	0	0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1	0	1	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97	-97	349	446	30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327	68	135	67	396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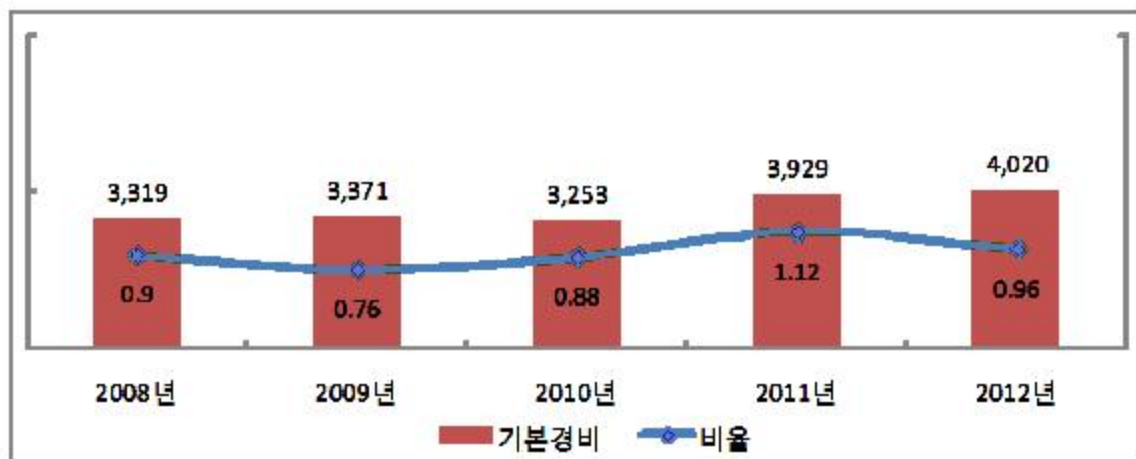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0,186	4,020	0.96%	
일반운영비	420,186	1,457	0.35%	
여 비		2,108	0.50%	
업무추진비		362	0.08%	
직무수행경비		92	0.02%	
자산취득비		1	0%	

- ▶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기본경비	3,319	3,371	3,253	3,929	4,020
비율(%)	0.90%	0.76%	0.88%	1.12%	0.96%



-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울주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52㎡이며,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울주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울주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523	4,575	-1,052	0

-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울주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420,186	48,819	11.62%	
인건비(101)	420,186	40,044	9.53%	
직무수행경비(204)		1,293	0.31%	
포상금(303)		1,967	0.47%	
연금부담금 등(304)		5,514	1.3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인건비: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인건비(B)	42,005	41,326	42,595	44,962	48,819
인건비비율(B/A)	11.40%	9.36%	11.49%	12.86%	11.62%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울주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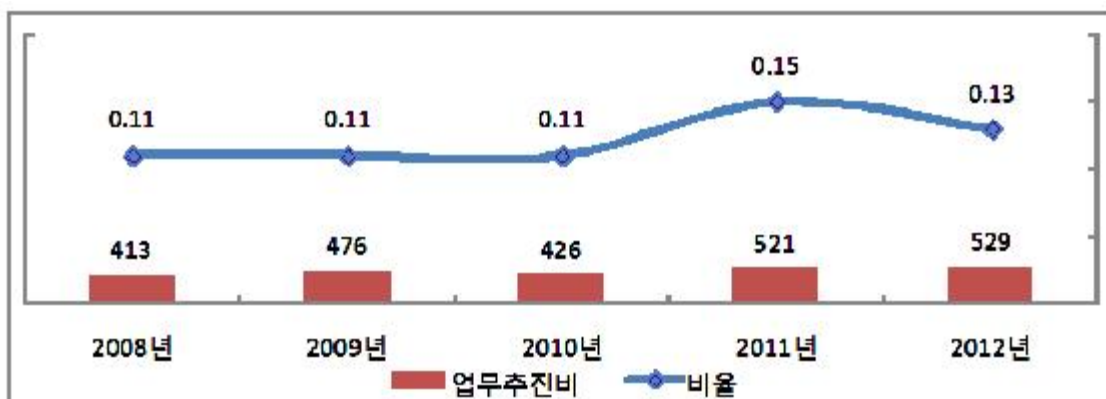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420,186	529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20,186	18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44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업무추진비	413	476	426	521	529
비율 (%)	0.11%	0.11%	0.11%	0.15%	0.13%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 (별지1 작성)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30~2.9	2011년 지자체합동평가우수관련 견학	호주, 뉴질랜드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5
3.3~3.9	태화강 생태관 건립관련 견학	일본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6.6
4.5~4.15	세계 알프스 브랜드 산악관광 국제교류 참가	스페인, 안도라, 스위스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8.5
4.13~4.21	민주평통 안보시찰 관련 국외여행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공무원 1명 민간인 31명	국제화여비3.2 민간인국외여비 55
4.23~4.26	외국선진음식문화견학인솔	일본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1.2
5.7~5.16	공원 조성 벤치마킹 관련 견학	미국	공무원 8명	국제화여비25.6
5.4~5.12	팀 프로젝트 수행 관련 해외견학 (건축홍보, 노인복지, 녹지 부문)	프랑스, 이탈리아	공무원 8명	국제화여비25.6
5.2~5.11	지방 정부와 대학과의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 선진 사례 견학	미국동부, 캐나다	공무원 9명	국제화여비28.8
5.16~5.23	원자력발전 및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견학	프랑스, 스위스	공무원 4명 (단체장포함)	국제화여비33.3
6.7~6.16	외국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견학	포르투갈, 스페인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11
6.20~6.27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	뉴질랜드, 호주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3
7.3~7.13	울산대 6급 중견관리자양성과정일환	북유럽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10
7.2~7.13	울산대 6급 중견관리자양성과정일환	미국서부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9.9
7.5~7.12	선진아동복지프로그램 운영 견학	미국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4.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7.5~7.11	2012년 우수시책 발표자 시책관련 해외사례 고찰을 위한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공무원 5명	국제화여비 14.7
8.4~8.6	우호협력도시 방문	일본(쓰시마)	공무원 4명	국외업무여비 3.6
8.27~9.04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	캐나다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4
9.19~9.25	농산물 해외 판촉홍보행사 참여	미국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6
9.12~9.21	건축, 도로, 농업분야의 해외사례 고찰을 위한 견학	프랑스, 이탈리아	공무원 4명	국제화여비 12.8
10.29~11.6	영남알프스 산악 관광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해외탐방	네팔	공무원 3명	국제화여비 9.6
10.10~10.18	울산 산업박물관, 미술관 유치 관련 선진국 운영사례 견학	미국, 캐나다	공무원 7명	국제화여비 22.4
10.10~10.18	토목, 문화예술, 지역경제 분야 시찰을 위한 견학	스페인	공무원 4명	국제화여비 12.8
10.24~11.2	해양관광자원 발굴 및 건축문화 선진지 견학	프랑스, 이탈리아	공무원 5명	국제화여비 16
10.23~11.1	방재시설 해외 선진지 견학	발칸5개국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3.8
10.26~11.3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광 해외 선진지 견학	캐나다	공무원 7명 (단체장포함)	국제화여비 47.4
10.31~11.4	국외소방시설 견학	베트남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0.9
12.11~12.18	2012년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독일, 체코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3.4
12.18~12.23	국제 오픈볼링대회 선수단 인솔	말레이시아	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1.6
5.12~5.20	해외선진지 지방세정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방세 발전방향 모색	그리스, 터키	공무원 2명	국제화여비 7
5.29~6.6	유럽 무역사절단 파견 및 기업체-바이어간 수출상담회 추진	벨기에, 네덜란드	공무원 2명	국외업무여비 9
10.2~10.11	국제기술협력조사단 파견 및 전문연구기관과 기술협력교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3명 (단체장포함)	국외업무여비 16
10.9~10.13	해외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	캄보디아	공무원 2명	국외업무여비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0.8~10.13	북유럽 무역사절단 파견 및 기업체-바이어간 수출상담회 추진	스웨덴, 핀란드	공무원 2명	국외업무여비 7
5.2~5.10	2012년 울주군 해외농업기술체험 국내 농업 발전 방안 모색	터키	공무원 1명	국외업무여비 2.6
			민간인 15명	민간인국외여비 21.5
6.27~7.2	2012년 울주군 해외농업기술체험 국내 농업 발전 방안 모색	일본	공무원 1명	국외업무여비 1.7
			민간인 15명	민간인국외여비 27
7.5~7.11	수출농가 해외연수 실시 지역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	중국	공무원 1명	국외업무여비 2.4
			민간인 14명	민간인국외여비 21.5
9.19~9.25	농산물 해외홍보 실시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미국	공무원 2명	국외업무여비 11.9
			민간인 2명	민간인국외여비 11.9
5.16~5.23	원자력발전소 및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해외 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위스	공무원 3명	국외업무여비 21
			민간인 1명	민간인국외여비 7
8.27~9.4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	캐나다	공무원 1명	국외업무여비 4
9.5~9.8 9.10~9.13	해외(일본)원전시설 견학	일본	공무원 6명	국외업무여비 19
			민간인 24명	민간인국외여비 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울주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20,186	583	0.14%	10	58

-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원 정원 : 10명 ('12.12.31기준)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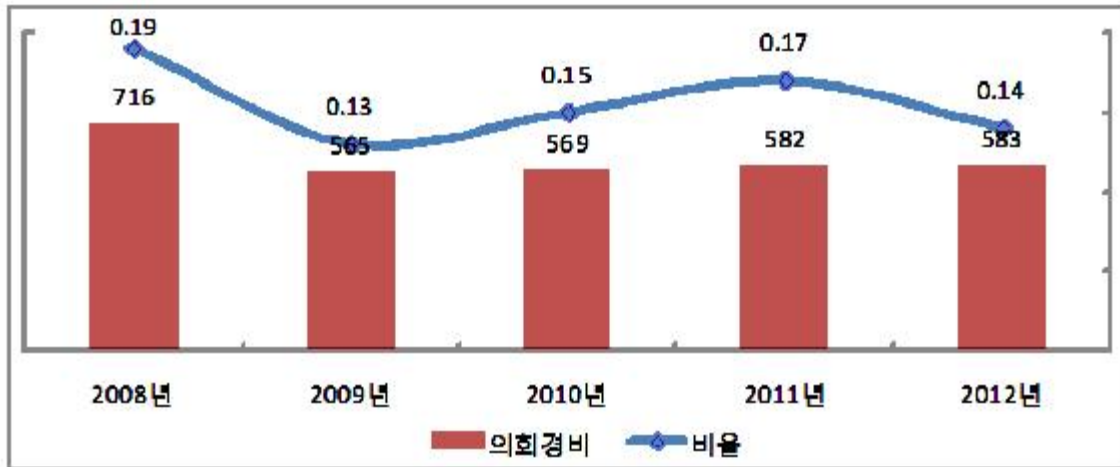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의회경비(백만원)	716	565	569	582	583
의원 정수(명)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9%	0.13%	0.15%	0.17%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72	56	57	58	58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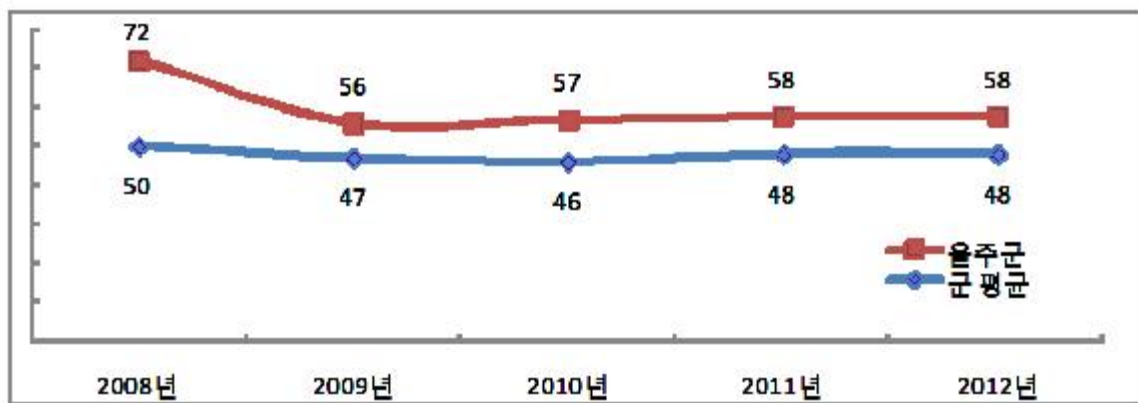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21	10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201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21백만원으로, 주요 집행액은 ‘산악관광개발 관련 우수시책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 검토’를 위해 9일여간 19백만원 지출하였으며 1인당 약 2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8.4~8.6	우호협력도시 방문 및 교류 행사	일본 대마시	의원2명	국외여비1.5
8.27~9.4	산악관광개발 관련 우수시책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 검토	캐나다	의원10명	국외여비19
			공무원5명	국외업무여비12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울주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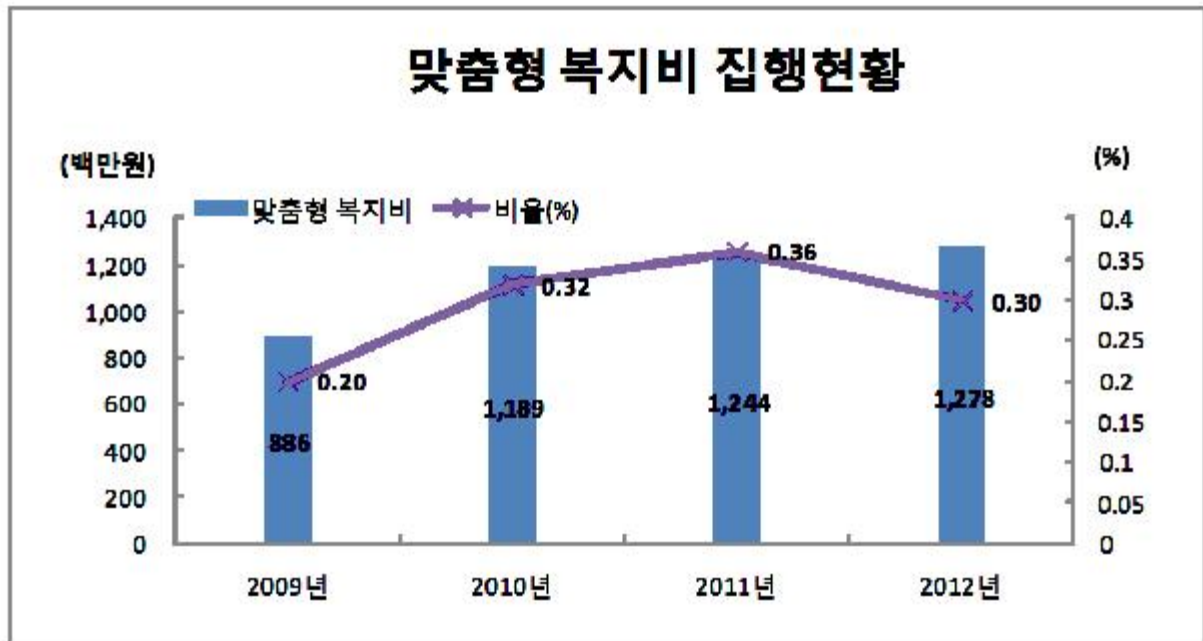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990	420,186	1,278	0.3	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863	902	915	990	
세출결산액 (B)	441,619	370,620	349,538	420,186	
맞춤형 복지비 (C)	886	1,189	1,244	1,278	
비율 (%) (C/B)	0.2	0.32	0.36	0.3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1	1	1	



2012년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1,27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결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전체 세출결산액의 0.36%보다 0.06%감소된 것입니다.

1인당 평균 배정액은 맞춤형 복지비 총액을 대상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2009년에 1백만원, 2010년에 1.31백만원, 2011년에 1.35백만원, 2012년에는 작년보다 5% 감소된 1.29백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울주군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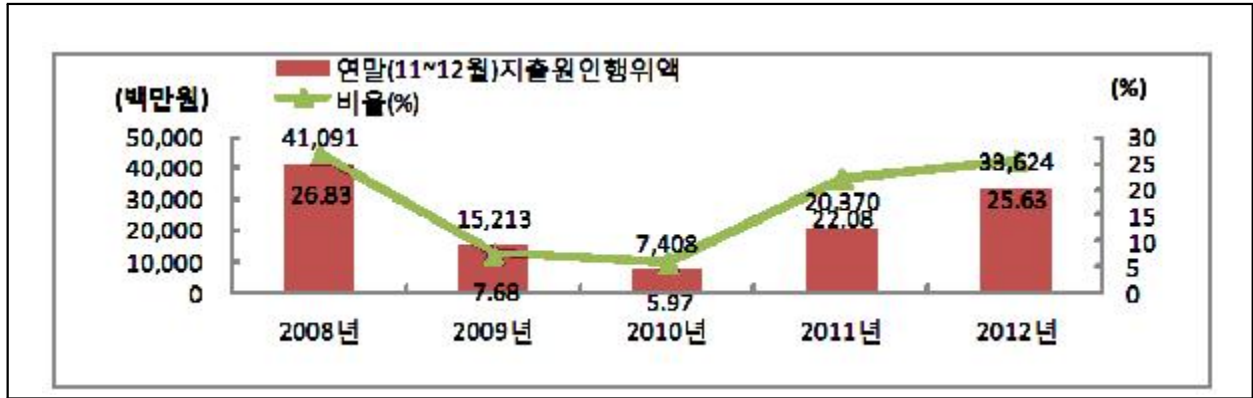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1,185	33,624	25.63%
시설비 (401-01)	130,089	32,847	25.25%
감리비 (401-02)	641	666	103.91%
시설부대비 (401-03)	335	95	28.4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0	16	13.0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53,177	198,073	124,125	92,267	131,185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1,091	15,213	7,408	20,370	33,624
비율(%) (B/A)	26.83%	7.68%	5.97%	22.08%	25.63%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2008년 이후 2009, 2010년에는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가, 2011년에는 농어촌도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 및 언양읍성 복원 등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늘어났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울주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2,839	22,626	213
지방세	11,847	11,885	-38
세외수입	10,993	10,741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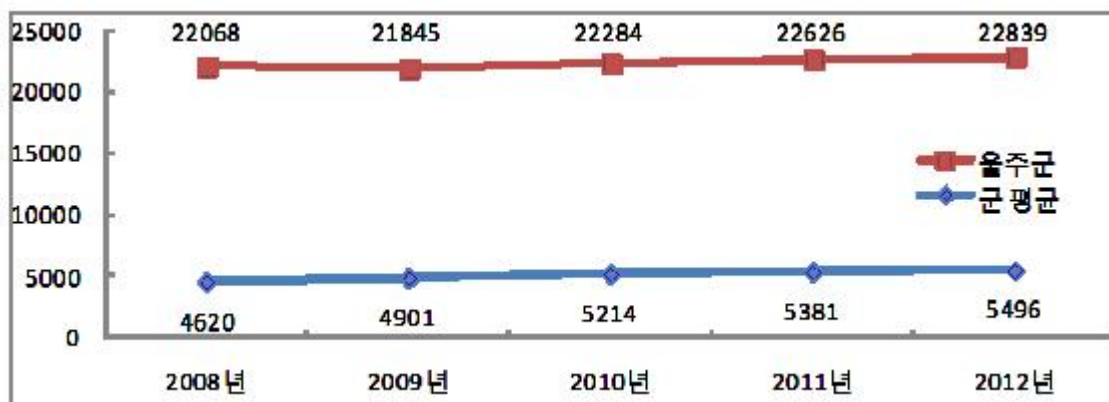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22,068	21,845	22,284	22,626	22,839
지방세	11,437	11,351	12,024	11,885	11,847
세외수입	10,631	10,495	10,259	10,741	10,99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지자체 체납액의 평균보다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는 동종 자치단체(군)와 비교하여 울주군이 세수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과액이 다른 군보다 많고, 체납액 규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크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리팀에 세무직 인력을 배치하고, 군 체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무과 직원의 체납자 방문, 군 전직원의 체납세 납부 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울주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4,200	12,953	13,586	42,055	26,730	1,408	750	0	6,719
국 비	42,498	9,097	3,679	16,930	12,049	718	0	0	25
시·도비	32,349	1,769	8,330	13,144	7,600	442	0	0	1,064
시·군·구비	29,353	2,087	1,577	11,981	7,081	248	750	0	5,6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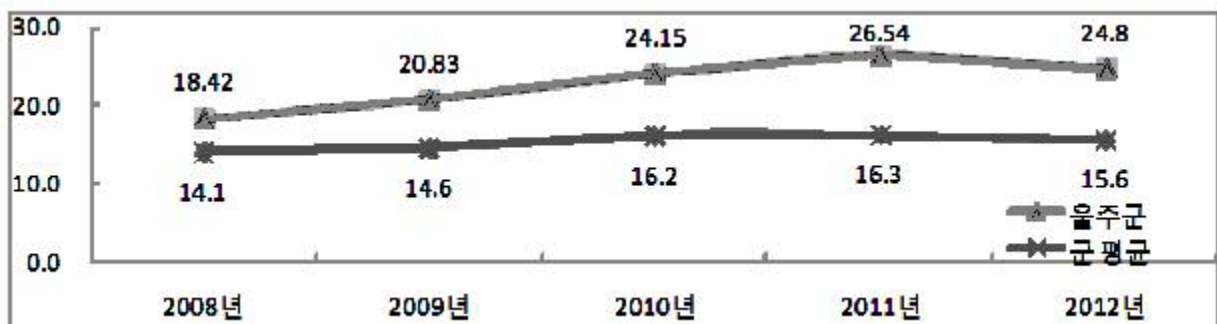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사회복지분야(B)	67,859	92,001	89,508	92,758	104,20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42	20.83	24.15	26.54	24.8
인구수(C)	191,687	195,399	201,000	204,680	207,840
주민인당 사회복지비(B/C)	0	0	0	0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7-2. 민간단체보조금

☐ 다음은 울주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 고
계	420,186	6,965	1.66%	
민간경상보조(307-02)	420,186	3,761	0.90%	
사회단체보조(307-03)		500	0.12%	
민간행사보조(307-04)		2,704	0.6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민간단체보조금 연도별 비교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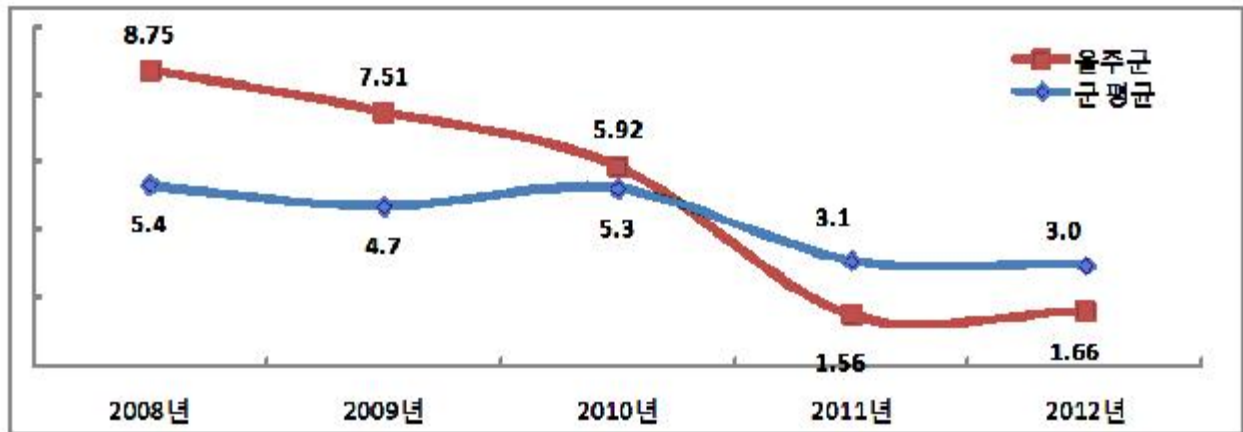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민간단체 보조금	32,232	33,155	21,935	5,466	6,965
비율 (%)	8.75%	7.51%	5.92%	1.56%	1.66%



2010년도에 비해 2011년에 민간단체보조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는 민간경상보조금(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금(307-04)에 편성되었던 예산의 일부가 신설된 민간이전경비의 사회복지보조금(307-10)과목으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별지2 작성)

7-3.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울주군이 2012년 한해 동안 군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0,186	3,715	0.8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68,312	441,619	370,620	349,538	420,186
행사·축제경비	3,709	3,120	3,636	3,791	3,715
비율 (%)	1.01%	0.71%	0.98%	1.08%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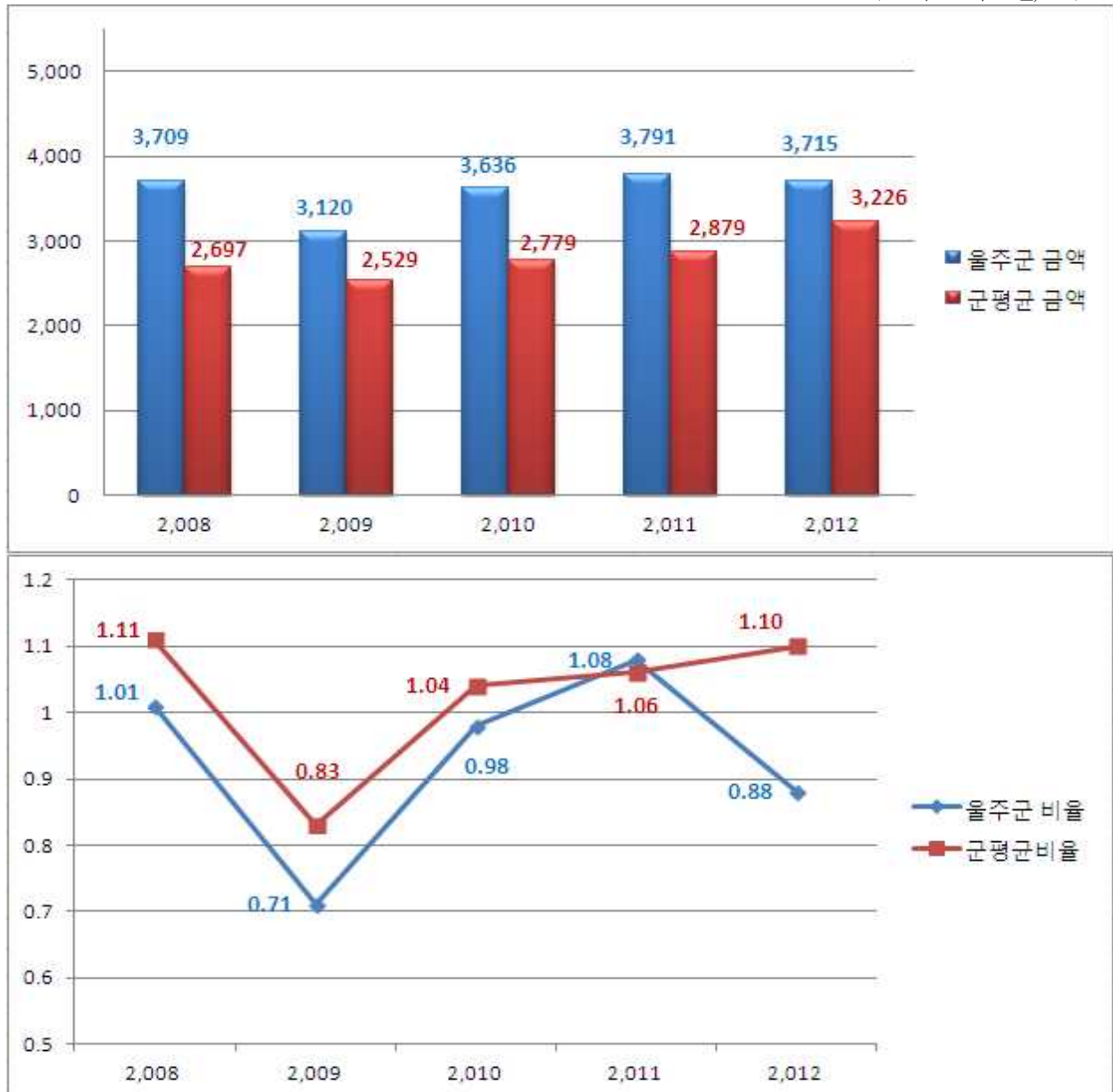


2012년 행사·축제경비는 작년대비 2.1% 감소된 3,71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른 동종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우리 군이 전체세출예산에서 행사·축제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다음장 참고)

주요 집행내역은 생명의 그릇 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한 '울산용기축제', 20만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군민의 날' 행사, 2013년 울주군수배 전국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 등 각종 체육대회 등 입니다.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12년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세부내역(별지3 작성)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울주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설치일자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545	19,049	20,666	1,617	58,594	
신청사건립기금	32,816	18,611	18,678	67	51,427	2008.7.
옥외광고정비기금	150	34	34	0	184	2009.8.
식품진흥기금	277	-22	35	58	255	2000.7.
재난관리기금	4,701	259	1,601	1,341	4,960	2005.11.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434	5	15	10	439	1999.7.
기초생활보장기금	928	162	297	135	1,090	2006.1.
노인복지기금	239	0	7	7	239	2000.8.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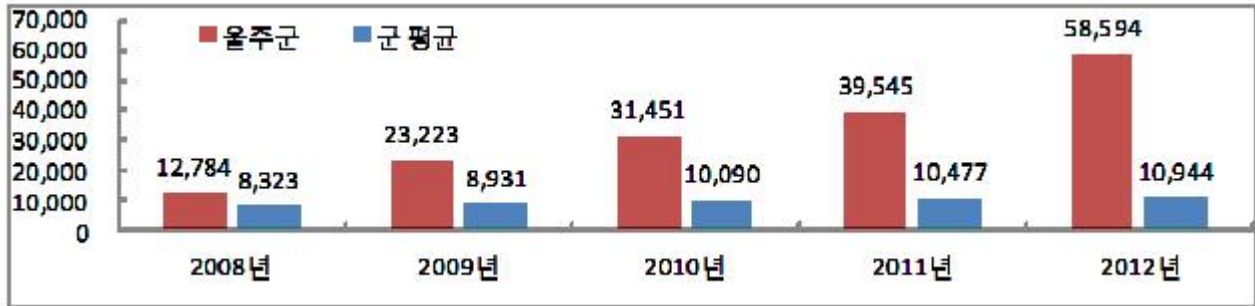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2,784	23,223	31,451	39,545	58,5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울주군 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87.75	81.13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7.77	99.57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 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5.6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 율
	일몰제 적용율	50	44.71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 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90	92.11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0.02	93.6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100	92.1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 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100	83.1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5	90.4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 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2.5	93.62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 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2012년 분석대상기금인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입니다.

○ 노인복지기금 종합분석결과

1.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교육 및 건강증진 도모와 노인 단체 운영활성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됨
2.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통한 사기양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통합 기여 및 보람찬 노후생활지원 가능케 하기위하여 현재 2억3천만원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노인 단체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요구됨
3.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사업성과가 기대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기금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 종합분석결과

1.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됨.
2. 지속적인 기금의 확보를 통해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
3.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간판시범거리 조성, 경관개선,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보수 등 광고물 정비의 막대한 사업비 소요에 따른 재원확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90,013	581,163	1,740	91,341	981	17,340	390,772	655,164
토 지	18,870	442,546	1,632	65,014	976	16,950	19,526	490,609
건 물	427	125,665	39	24,502	3	240	463	149,927
입목죽	370,063	5,872	11	474	0	0	370,074	6,345
공작물	592	6,433	54	1,246	0	0	646	7,679
기계기구	46	337	0	0	0	0	46	33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	3	0	0	0	0	4	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5	265	1	35	2	150	4	150
회원권	6	43	3	70	0	0	9	112

-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전년도 대비 74,001백만원이 증가한 655,164백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으로 토지는 남창용기종기시장 주차장,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 언양읍성복원사업, 작수천명소화사업, 울리 영축사지, 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보상 등 공공사업부지 보상취득(759필지, 202,057㎡, 44,197백만원) 및 기부채납, 누락재산 등록 등(873필지, 587,044㎡, 20,817백만원)입니다.

건물은 언양신흥경로당, 청량성남경로당, 서생화정경로당, 온양대안3리경로당, 삼남상천경로당 등 신축 및 매입(39동, 25,149㎡, 24,502백만원)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23	2,531	252	1,656	41	398	534	3,789	
구 매	329	2,556	27	415	0	0	356	2,971	
관리전환	0	0	3	36	1	16	2	2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	-25	222	1,205	40	382	176	798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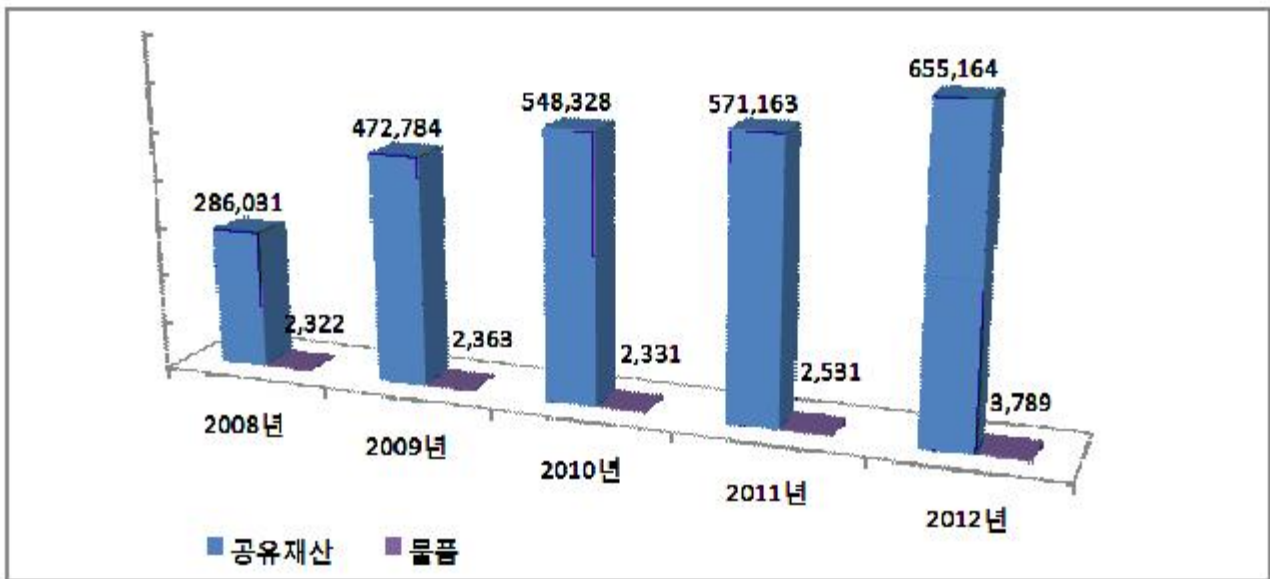


2012년 울주군 물품 증감사항은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 고시 제 2011-12호)에 따라 냉난방기,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서버 등 7종이 추가되어 200대 1,015,000천원, 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 등 9대 218,000천원, 노트북등 정보통신기기 및 디지털 캠코더 등 전자기기에 423,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 고시 제2011-12호)에 따라 정수에서 빠진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 구급차 3종 29대 358,000천원, 차량 및 노트북컴퓨터 불용처리 등 12대 40,000천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534대 3,789,000천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286,031	472,784	548,328	581,163	655,164
물 품	2,322	2,363	2,331	2,531	3,7809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울주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500,334	5,323	1.06%	0	0%	
일 반 회 계	420,186	5,323	1.27%	0	0%	
특 별 회 계	19,937	0	0%	0	0%	
기 금	60,212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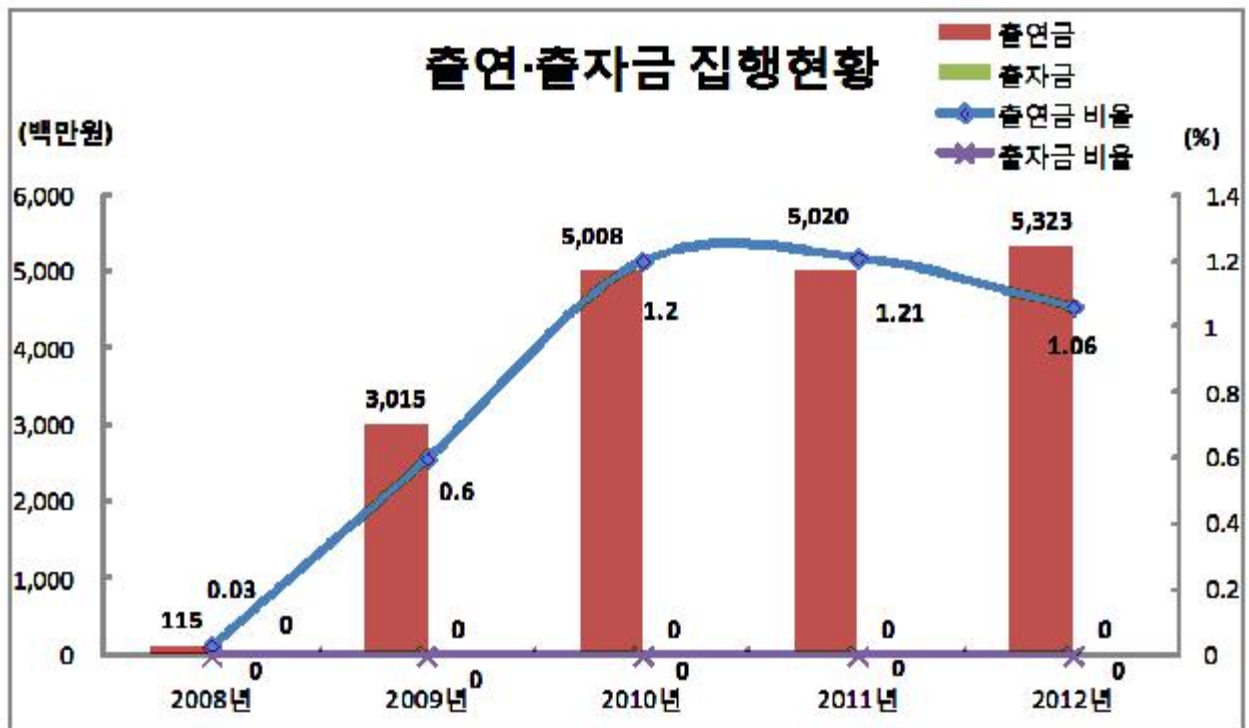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90,614	501,291	417,144	415,192	500,334
출연금(B)	115	3,015	5,008	5,020	5,323
비율(B/A)(%)	0.03%	0.60%	1.20%	1.21%	1.06%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100	100	100	100	0
비율(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4 작성)

8-4. 지방공기업 현황

-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울주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울주군시설 관리공단	153	140	40	6,797	6,797	0	나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2회계연도 결산)
-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단	울주군시설관 리공단	0	0	0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364,674	2,224,928	139,746	1,724,434
부채 총계	11,220	8,227	2,993	31,596
비용 총계	336,398	298,355	38,043	229,138
수익 총계	472,941	395,655	77,287	321,82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되어있습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I.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56%	1.84%	4.63%	
	2. 경상수지비율	58.73%	68.78%	62.93%	
	3. 지방채무잔액지수	0%	21.13%	7.11%	
	4. 지방채무상환비율	0%	3.06%	0.67%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3%	4.32%	1.66%	
	6. 자체세입비율	37.09%	29.28%	8.70%	
	6-1. 자체세입 증감률	14.85%	6.90%	2.44%	
II.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 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85	1.0063	1.003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485	-0.2491	-0.23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788	1.0916	1.032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21	-0.0589	-0.157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6	0.9970	0.9914
	세 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72	0.0094	0.0296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273	0.0849	0.141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217	0.1966	0.111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205	0.0631	-0.072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171	-0.0478	-0.0687	
III.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23%	104.21%	100.69%
	18. 예산집행률		75.89%	86.72%	79.19%
	19. 정책사업투자비율		47.55%	41.87%	60.3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101.43%	67.09%	69.09%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107.15%	65.87%	76.95%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1. 총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자체세입기반의 확충으로 재정상태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경상적 경비에 대한 효율성은 동급단체 보다 다소 저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도 다소 미흡함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으로 인해 통합·실질수지와 세입구조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채무잔액 및 부담능력 등에서 매우 양호함
- 재정효율성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리수준은 동급 자치단체의 수준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준경비와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은 동급단체에 비해 다소 미흡함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편성예산의 집행실적 및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 확충을 위한 노력 수준은 동급단체에 비해 저조함

2.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0%>

- 채무잔액이나 채무상환액이 전혀 없어 채무구조는 동급단체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래채무부담(장래부채 : 47.4억원)의 가중도(유형고정자산 대비 유동·장기 차입부채의 비율 : 0.23%) 등도 동급단체 보다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음

<자체세입비율 : 37.09%>

-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215억원 증가(10년 1,445억원 → 11년 1,659억원)로 인해 자체세입 기반은 전국 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양호한 상태임
 - 자체세입비율 : `07년 33.6% → `08년 36.6% → `09년 30.6% → `10년 34.2% → `11년 37.1%
 - 자체세입증감률 : `07년 25.5% → `08년 29.3% → `09년 -16.8% → `10년 -8.4% → `11년 14.9%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행사축제경비 절감 : -0.2205>

- 최근 행사축제경비의 규모와 세출 대비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함
 - 행사축제경비 : `09년 30.9억원→`10년 36.4억원→`11년 43.3억원
 - 행사축제경비 비중(세출대비) : `09년 0.65%→`10년 0.95%→`11년 1.1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47.55%>

- 최근 안정적인 자체세입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동급단체 보다 저조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0년 53.71%(평균 61.99%) → `11년 47.55%(평균 60.37%)

3. 개선사항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837억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행사축제의 규모 축소 및 통합을 위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에 기초하여 세출절감 및 세출비중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예산을 더욱 확충하는 등 정책 사업의 투자비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재정고 「2012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참고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text{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text{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times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 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 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text{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 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민간이전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text{세출결산액} / \text{예산현액}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출	$\text{투자지출액} / \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해 작성

: 우리군 해당사항 없음

9-4. 지방세 지출예산

- ☐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울주군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A)	22,608	20,519	20,086	20,070	19,191
비과세	17,057	15,640	16,406	15,883	14,713
감면	5,551	4,879	3,680	4,188	4,478
지방세 징수액(B)	195,281	155,074	134,697	143,799	171,848
비과세·감면율(A/A+B)	10.38%	11.69%	12.98%	12.25%	10.05%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구성비 (%)	'11년도 (B)	구성비 (%)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22,608	100.00%	20,519	100.00%	2,089	10.18%
일반공공행정	7,449	32.95%	6,831	33.29%	618	9.05%
공공질서 및 안전	80	0.35%	84	0.41%	△4	△5.21%
교육	275	1.22%	250	1.22%	25	10.14%
문화 및 관광	418	1.85%	370	1.81%	47	12.7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118	4.95%	1,070	5.21%	48	4.52%
보건	104	0.46%	96	0.47%	8	8.39%
농림해양수산	281	1.24%	242	1.18%	39	16.00%
산업·중소기업	164	0.72%	156	0.76%	7	4.70%
수송 및 교통	116	0.51%	84	0.41%	32	37.98%
국토 및 지역개발	2,799	12.38%	2,312	11.27%	487	21.0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695	42.88%	8,924	43.49%	771	8.6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1	0.49%	100	0.49%	11	10.91%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608	17,057	5,389	24	137	
보 통 세	소 계	22,608	17,057	5,389	24	137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48	18	30	0	0	
	레저세	21,613	16,936	4,533	7	136	
	지방소비세	938	103	817	18	1	
	주민세	0	0	0	0	0	
	재산세	9	0	9	0	0	
	자동차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면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36,694
여성정책추진사업	6	18,8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12,412
기 타	18	5,459

-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7,987	14,747	1

-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민참여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구영 체육공원 조성,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로정비, 사랑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등 입니다.
https://www.ulju.ulsan.kr/Elec_Appeal/center12.php 로 접속하시면, 울주군 예산편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7. 원가회계 정보

① 총괄

행사·축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계					2,721,261	710,000	2,011,261
1	사회적약자배려	주 민 생 활 서비스박람회	10.19~20	8대서비스, 나눔봉사,전시홍보 체험행사	100,000	-	100,000
2	지 역 특 산 물 전통시장활성화	연양불고기축제	10.12~14	천도제, 개막식, 한 우 가 요 제 등	252,840	30,000	222,840
3	지 역 특 산 물 전통시장활성화	울주명품한우 선 발 대 회	10. 11	한우 품평회 및 한우농가한마음행사	80,000	30,000	50,000
4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군민의 날 기 념 행 사	4. 19	체육, 문화행사	168,017	-	168,017
5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울주오디세이	10. 13	산악음악회	90,000	-	90,000
6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밴프세계산악 영 화 제	8.1~3	밴프산악영화제 월드투어작품 26편 상영	100,000	-	100,000
7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전 국 산 악 M T B 대 회	9. 16	산악자전거대회	50,000	-	50,000
8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간절곶 전국 여자축구대회	3.17~18	9 개 시 도 여자축구팀초청 축 구 대 회	50,000	-	50,000
9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전국중학교축구 스토브리그대회	1.5~21	전 국 중 학 교 17개팀 축구대회	60,000	-	60,000
10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범서선바위 하하페스티벌	8. 11	색체험,음악회, 영 화 상 영	60,000	-	60,000
11	주 민 화 합 과 건강한지역사회	간절곶오디세이	8. 4	국악(사물놀이), 락,비보이댄스, 성악,순수무용	72,000	-	72,000
12	전 통 문 화 계 승 발 전 보 존 홍 보	웅기축제	5.25~29	웅 기 시 연 , 체험 및 공연	708,404	350,000	358,404
13	국제우호친선협력	2012 울 산 진 하PWA 세계윈드서핑대회	5.5~13	세계윈드서핑대회	530,000	150,000	380,000
14	국제우호친선협력	울 산 진 하 세계여자비치 발 리 볼 대 회	8.14~17	비치발리볼대회	400,000	150,000	250,000

② 세 부 원 가 회 계 정 보

1

주 민 생 활 서 비 스 박 람 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복지, 보건,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분야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한곳에서 보고 체험함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박람회 개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0. 19~20(2일간) / 2008년 / 3회(2년마다 실시)
- 사업내용 :
 - 주 제 : 기분 좋은 동행! 함께 가는 울주!
 - 장 소 : 울주군 온양읍 체육공원 (온양읍 외고산 웅기길 154)
 - 방문객 : 13,000여명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울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후원 : 울주군의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100,000 (군비 100,000))	-
집 행 액	10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 (수익) ㉒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100,000	-	100,000	계	-	100,000
인 건 비	3,000	-	3,000	보조금	국 비	
운 영 비					시도비	
행 사 직 접 비	32,408	-	32,408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 익	
대 외 홍 보 비	20,200	-	20,200		기 타 수 익	
시 설 장 비 비	38,942	-	38,942			
참가자보상비	5,450	-	5,450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주민8대서비스를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고용·주거, 체육, 나눔봉사, 전시홍보 및 체험분야 등으로 구성·운영하여 주민생활서비스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에 이바지하였고,
- 또한 8대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연양불고기축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한우 우수성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0. 12~14(3일간) / 1999년 / 13회
- 사업내용 : 천도제, 개장식, 개막식, 한우가요제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 연양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252,840 (시비30,000 군비222,840)	170,000
집 행 액	252,840	17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33%*	수탁기관 67%*					
계		252,840	82,840	170,000	계		30,000	222,840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운 영 비	행 사 직 접 비	1,500	-	1,500		서비스요금	시도비		30,000
	대 외 홍 보 비	16,800	-	16,800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178,840	82,840	96,00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55,700	-	55,700.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한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 축산농가와 특구업소간 공급협약을 통한 상생과 화합 도모와
- KTX 울산역을 이용한 홍보업무로 지역축제 대외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울주명품한우선발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우 품평회를 통하여 우리지역 한우산업의 육성 발전을 널리 알리고 한우농가 단합 및 사육의욕 고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0. 11(1일간) / 2010년 / 1회
- 사업내용 : 울주 명품한우 선발을 위한 품평회 및 한우사육농가 단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 2012 울주 명품한우 선발대회 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80,000 (시비 30,000 군비 50,000)	-
집 행 액	8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80,000	-	80,000	계		30,000	50,000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운 영 비	행 사 직 접 비	16,860	-	16,860		시도비	30,000	
	대 외 홍 보 비	-	-	-	서 비 스 요 금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38,140	-	38,14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25,000	-	25,000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명품한우 선발대회 4종 40농가 40두 출품 후 선발대회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한우 홍보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 일반 축산농가 2,000여명의 참가 및 행사 관람과 이벤트 행사 등으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4

군 민 의 날 기 념 행 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화합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4. 28(1일간) / 1984년 / 21회
- 사업내용 : 기념식, 체육·문화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산시 울주군 / 울주군체육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168,080 (군비168,080)	170,000
집 행 액	168,017	169,165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 (수익) ㉒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16.7%*	수탁기관 83.3%*					
계		168,017	28,017	140,000	계		-	168,017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운 영 비	행 사 직 접 비	104,158	16,902	87,256		서비스요금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5,935	5,935	-	사 용 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41,144	-	41,144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11,600	-	11,600					-
감가상각비		-	-	-			-		
기 타		5,180	5,180	-	** 수탁기관 자체수입 (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전 군민이 하나되어 일심단결의 힘을 보여주었고, 질서정연하게 경기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지역화합과 우리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토대가 됨

5

울 주 오 디 세 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불산 간월재 역사발을 배경으로 산악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관광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0. 13(1일간) / 2010년 / 2회
- 사업내용 : 신불산 역사발을 배경으로 산악음악회를 개최, 영남알프스 홍보 계기가 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90,000 (군비90,000)	-
집 행 액	9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 (수익) ㉒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90,000	-	90,000	계	-	90,000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요 요 비	행 사 직 접 비	-	-	-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10,500	-	10,500		서 비 스 요 금		사용료 수 익
	시 설 장 비 비	39,500	-	39,50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40,000	-	40,000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신불산 간월재 역사발을 배경으로 산악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

6

밴 프 세 계 산 악 영 화 상 영 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남알프스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밴프산악영화제 월드투어’ 작품을 유치하여, 영남알프스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휴가철 피서객들에게 산악영화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8. 1~3(3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밴프산악영화제 월드투어’ 작품 26편 상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100,000 (군비100,000)	-
집 행 액	10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100,000	-	100,000	계	-	100,000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운영비	행 사 직 접 비	-	-	-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14,400	-	14,4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 익
	시 설 장 비 비	31,500	-	31,50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	-	-				
감가상각비		-	-	-				
기 타(영상작업비)		54,100	-	54,100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영남알프스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밴프산악영화제 월드투어작품’ 을 유치하여, 영남알프스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에게 산악영화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

7

전국산악MTB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남알프스 산악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전국산악동호인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9. 16.(1일간)/ 2009년 / 4회
- 사업내용 : 산악자전거 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경상일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50,000 (균비50,000)	50,000
집 행 액	50,000	5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50,000	-	50,000	계		-	50,000	
인 건 비		7,101	-	7,101	보조금	국 비	-		
요요비	행 사 직 접 비	10,195	-	10,195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5,704	-	5,704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8,000	-	8,00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19,000	-	19,000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대회에 참가한 전국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악자원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의 숙박과 식사로 지역상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8

간 절 곳 전 국 여 자 축 구 대 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자축구인의 저변확대와 우수한 체육인프라 구축 및 울주군 여자축구팀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3. 17~18(2일간) / 2010년 / 3회
- 사업내용 : 19개 각 시도 여자축구 초청팀, 울산광역시내 여성축구팀 5팀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울산신문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50,000 (군비50,000)	50,000
집 행 액	50,000	5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 (수익) ㉒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50,000	-	50,000	계		-	50,000	
인 건 비		4,950	-	4,950	보조금	국 비	-		
운 영 비	행 사 직 접 비	22,266	-	22,266		서비스 요금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	-	-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4,334	-	4,334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18,450	-	18,450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전국의 19개팀 500여명 참여로 숙박과 음식점의 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 여성 축구인의 저변확대로 여자축구인들의 상호화합도모 및 울주군 여자축구팀 홍보의 기회가 됨.

9

전국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 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울주군 홍보 및 청소년 축구발전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 5~21 / 2012 / 1회
- 사업내용 : 전국 중학교 축구 17개팀 1,000팀
- 운영방식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울주군 축구협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60,000 (군비60,000)	-
집 행 액	6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60,000	-	60,000	계	-	60,000	
인 건 비		23,720	-	23,720	보조금	국 비		-
운영비	행 사 직 접 비	19,280	-	19,280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	-	-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	-	-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17,000	-	17,000				
감가상각비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기 타		-	-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전국 중학교 축구팀 17개팀 1,000명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됨

10

범 서 선 바 위 하 하 페 스 티 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선바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물놀이 이색체험 및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8. 11 / 2012 / 1회
- 사업내용 : 이색체험, 음악회, 영화상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울산제일일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60,000 (군비60,000)	-
집 행 액	6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60,000	-	60,000	계	-	60,000		
인 건 비		8,395	-	8,395	보조금	국 비		-	
여 외 비	행 사 직 접 비	12,000	-	12,000		서비스요금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5,000	-	5,000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17,815	-	17,815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5,840	-		5,840			
감가상각비		-	-	-					
기 타		10,950	-	10,950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군의 지역적 여건상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 휴가철 피서객들에게 물놀이등 이색체험을 제공하고 공연 및 영화상영 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11

간 절 곳 오 디 세 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공연 제공을 통한 피서지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울주 관광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8. 4 / 2012 / 1회
- 사업내용 : 국악(사물놀이), 성악, 락, 비보이댄스, 순수무용 공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울산매일신문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72,000 (군비72,000)	-
집 행 액	72,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 (수익) ㉒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72,000	-	72,000	계	-	72,000	
인 건 비		-	-	-	보조금	국 비		-
유 요 비	행 사 직 접 비	-	-	-		시도비		-
	대 외 홍 보 비	6,025	-	6,025		서 비 스 요 금		사용료 수 익
	시 설 장 비 비	27,300	-	27,30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38,220	-	38,220				
감가상각비		-	-	-				
기 타		455	-	455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넓고 푸른 바다를 소재로 한 우리군만의 고유한 색깔을 담은 문화요소를 창출하여 우리군 관광홍보를 극대화하고
- 피서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됨

12

웅 기 축 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국최대 웅기 집산지인 외고산 웅기마을 활성화 및 울주 관광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5. 25~29 / 2000 / 12회
- 사업내용 : 웅기시연,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울산웅기축제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711,800 (시도비350,000 군비361,800)	607,000
집 행 액	708,404	605,083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2%*	수탁기관 98%*					
계		708,404	8,404	700,000	계		350,000	358,404	
인 건 비		49,868	-	49,868	보조금	국 비	-		
운영비	행사직접비	420,748	-	420,748		서비스요금	시도비		350,000
	대외홍보비	135,445	-	135,445			사용료수익		-
	시설장비비	93,939	-	93,939	기타수익		-		
	참가자보상비	3,279	3,279	-					
감가상각비		-	-	-					
기 타		5,125	5,125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외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웅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울산대표축제로 발전을 도모하고
- 웅기마을의 활성화 및 울주 관광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

13

2012년 울산 진하PWA세계원드서핑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원드서핑대회를 통한 울주군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5. 5~13(8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원드서핑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 UBC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530,000 (시도비150,000 군비380,000)	-
집 행 액	53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530,000	-	530,000	계		150,000	380,000	
인 건 비		34,612	-	34,612	보조금	국 비	-		
운영비	행 사 직 접 비	273,697	-	273,697		시도비	150,000		
	대 외 홍 보 비	99,791	-	99,791					
	시 설 장 비 비	90,200	-	90,200	사용료 수 익		-		
	참가자보상비	31,700	-	31,700	서비스요금	기 타 수 익	-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원)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30개국 80여명의 최정상급 세계원드서핑 선수들과 국내선수 150여명이 참여하여
- PWA 세계원드서핑대회를 통해 울주군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해양레포츠 메카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 진하해수욕장을 세계적인 해양스포츠 기반시설로 확장, 운영하여 해양스포츠기반의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함

14

2012울산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치발리볼대회를 통한 울주군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8. 14~17(3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비치발리볼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울주군 / MBC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400,000 (시도비150,000 군비250,000)	-
집 행 액	400,000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 (수익) ㉡			순원가 (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400,000	-	400,000	계		150,000	250,000		
인 건 비		25,120	-	25,120	보조금	국 비	-			
운 영 비	행 사 직 접 비	73,969	-	73,969		시도비	150,000			
	대 외 홍 보 비	114,134	-	114,134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 익			-
	시 설 장 비 비	64,735	-	64,735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122,042	-	122,042						
감가상각비		-	-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한국2팀을 비롯하여 9개국 10팀이 참석하여
-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비상하고 있는 울주군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마련한 것은 물론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3,000여명의 관광객과 울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우리 울주군이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2012. 05.1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소홀	○ 부과하지 아니한 2건의 이행강제금 3,179천원 부과 ○ 직원교육 등 조치	○ '12.06.11 이행강제금 부과(340천원) ○ '12.06.18 이행강제금 부과(2,839천원) ○ '12.05.17 직원교육실시
울산광역시	2012. 05.11	석면철거 용역업무 처리소홀	○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1,100천원회수	2012.7.2 회수 (1,100,000원)
울산광역시	2012. 05.11	용역설계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 과다 계상된 금액 감액 조치	<문화관광과> ○ 12.06.25 : 설계변경 (30,590천원 감액 조치) <정책사업과> ○ 설계용역 지반조사비 감액 조치 ○ 6. 20. 직원 교육 실시 완료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dept.ulsan.go.kr/inspection/>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우리 울주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은 없으며,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2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울주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온양 대안 233-32번지일원(중2-25)도로개설공사	7,200	5,455	350	-	2013	2010	70
청량 군도 18호선 외 1개소 선형개량공사	3,156	1,030	2,126	-	2014	2012	60
언양 어음 도시계획도로(소2-1,8,9호)개설공사	6,733	6,683	50	-	2013	2012	70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사업	4,800	4,800	-	-	2013	2011	100
울주선바위도서관건립공사	20,000	12,800	7,200	-	2013	2009	50
서부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2,040	364	1,676	1,601	2013	2011	10
두서면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공사	5,990	1,080	4,110	800	2014	2012	10
태화강생태관건립공사	15,000	5,427	2,475	7,098	2014	2010	30
온 산 복 합 커 뮤 니 티 센 터 건립공사	22,300	14,400	7,900	-	2014	2010	55
언양 소도읍육성사업	12,000	6,535	2,732	2,733	2014	2008	90
범서 구영체육시설조성사업	12,067	225	2,243	9,599	2015	2011	10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	50,000	3,100	0	46,900	2018	2013	10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26,000	35	167	25,798	2016	2012	10

▶ (대상사업)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회,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6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별지5 작성)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울주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 작성기준 : 2013.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울주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해	당	없	음		

-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 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특수공 시

1. 오영수 문학관 건립
2. 울주민속박물관 건립
3.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4.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5. 울주 통합관제센터 구축
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7. 작수천 명소화 수변 야영장사업
8. 태화강생태관 건립
9. 울주범서도서관 건립
10.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1

오영수 문학관 건립

목 적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울산출신 문학가 난계(蘭溪) 오영수선생의 문학혼을 울산의 정신문화로 승화시켜 지역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우리나라 소설문학 중흥을 위해 문학관을 건립 및 다양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지역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013
- 위 치 : 언양읍 송대리 산45-8번지 일원(대지면적 4,152m²)
- 규 모 : 지상2층 1동, 연면적 538.18m²(162坪)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1,500, 군비 500)
-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문학관)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1. 6. : 울산광역시 협의
(군: 토지매입·건립·운영등 사업전반, 시: 공사비 지원)
- 2011. 6.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토지매입비 5원)
- 2011. 12 : 편입토지 보상완료
(10필지 5,563m² : 부지4,152, 진입로1,411)
- 2012. 11 : 설계용역완료(2012. 4. 설계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3. 7월 : 전시물공사 착수
- 2013. 10월 중순 : 준공

□ 기대효과

- 오영수 선생의 문학혼을 울산의 정신문화로 승화시켜 지역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우리나라 소설문학 중흥
- 다양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지역의 문화시설로 자리 매김 하고자 함.

□ 관련사진



2

울주민속박물관 건립

목 적

울주군의 잊혀져가는 민속자료를 전시하여 민속 문화의 보전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통 민속체험을 전문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2013
- 위 치 : 온양읍 고사리 446-1 외 2필지
- 규 모 : 지상2층 1동 연면적 1,326㎡
- 총사업비 : 3,515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현재까지 추진실적

- 2011. 10.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11. 11.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2012. 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축협의
- 2012. 2. 23 : 공사계약(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 2012. 10. 11 : 전시물공사 계약
- 2012. 11. 16 ~ 12. 31 : 전시물 시공계획안 자문
(울산·대곡박물관장)
- 2013. 3. 22 : 건축공사 준공
- 2013. 4. 7 : 전시물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민속 문화 보전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통 민속체험을 전문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

□ 관련사진



3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목 적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거 체계적인 복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 보존 및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018
- 위 치 :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 규 모 : 266필지 67,986m², 성곽길이 1,500m
- 총사업비 : 156,400백만원(국비 109,480, 시비 23,460, 군비 23,460)
- 사업내용 : 문화재지정구역내 토지매입, 성곽정비 및 4대문 복원, 성
내 주요시설물 복원 등

■ '12년까지 추진실적

- '11. 8. :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문화재청 고시
(132필지 26,997m²) 기 지정 : 134필지 40,989m²
- '11. 12. : 북문지 주변 성곽정비공사(350백만원)
- '10. 2.~'13. 2. : 남문복원 정비 추진
(소도읍 육성사업 7,380백만원)
- '12. 3. 28. :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1. 9. 1 ~ '12. 3. 28 / 한국전통문화학교
- '12. 6. : 남문지 주변 토지매입(5필지, 606m², 70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3. 7월 이후 : 토지매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
- 2014년 이후 : 지정구역 토지매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거 체계적인 복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관련사진



4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목 적

연간 250여만명이 방문하는 동남권 최대 산악관광지역인 영남알프스 초입부에 산악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산악구조, 주차장 등의 복합적 기능을 보유한 복합웰컴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014
- 위 치 :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5길(등억리 515-4번지 일원)
- 규 모 : 103,604m²
- 총사업비 : 25,480백만원(광특 6,390, 시비 6,570, 군비 12,520)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산악레포츠 지원, 산악구조, 주차장, 광장 등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2. 4 : 실시설계 착수
- 2012.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2. 10 :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13. 8 : 실시설계 준공
- 2013. 10 : 공사착공
- 2014. 12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KTX 울산역 연계, 영남알프스 역사대축제 개최 등으로 인한 수도권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침체되어 있는 등억온천지구 활성화, 주차장, 휴게시설 확보로 이용객 편의증대

□ 관련사진

● 마스터플랜



● 배치도
(1단계)



5

울주 통합관제센터 구축

목 적

관내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하여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검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울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위 치 : 웅촌면 검단리 1091-19번지 구)웅촌검단복지회관
- 규 모 : 지상3층(730.01㎡)
- 총사업비 : 1,631백만원(국비 536, 시비 456, 군비 559, 기타 80)
- 사업내용
 - 웅촌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 통합관제센터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
 - 통합관제센터 저장매체관리 시스템 구입
 - 통합관제센터 운영장비 구입설치(LED멀티비전, 음향장비 등)
 - 초등학교 CCTV연계 비디오서버 구입설치 등

□ '12년까지 추진실적

- 초등학교 CCTV연계 통합 완료 : 160대
- 목적별 CCTV 통합완료 : 273대
- 웅촌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 통합관제센터 운영장비 등 구입설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방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CCTV 통합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통합완료 : '13. 5월)
 - 통합CCTV 예상 대수 : 35대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 28대
 - 언양시장 CCTV : 2대
 - 언양읍성 문화재 CCTV : 5대

□ 기대효과

- 24시간 통합CCTV 관제로 실시간 범죄예방 효율성 향상
- 목적별 CCTV를 다목적용으로 활용하여 중복지역 투자 방지
- 유관기관(경찰서)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강화

□ 관련사진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목 적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3. ~ 2013.12.
- 위 치 : 언양공설시장, 남창용기종기시장, 덕신1차시장
- 규 모 :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도로, 간판정비 등
- 총사업비 : 4,679백만원(국비 2,753, 시비 871, 군비 1,055)
- 사업내용 :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덕신1차시장 아케이드 설치,
남창용기종기시장 주차장 조성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2. 3. ~ 7. : 남창용기종기시장 주차장 토지매입 완료
- 2012. 7. ~ 11. : 남창용기종기시장 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12. ~ :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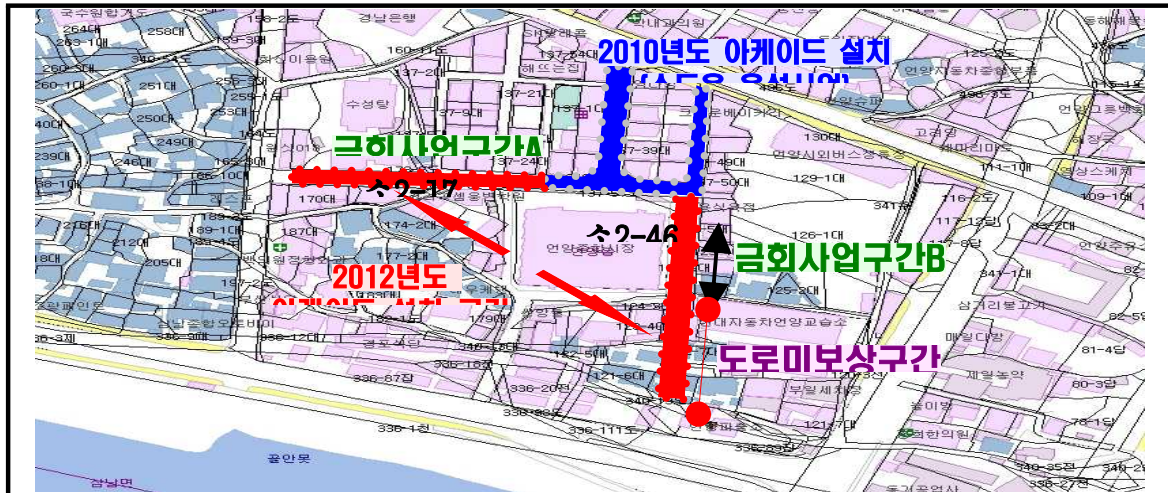
- 2012.12. ~ 2013. 3. : 덕신1차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1. ~ 7. : 남창용기종기시장 주차장 준공
- 2013. 7. : 덕신1차시장 아케이드 공사착공
- 2013. 9. :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준공
- 2013.12. : 덕신1차시장 아케이드 준공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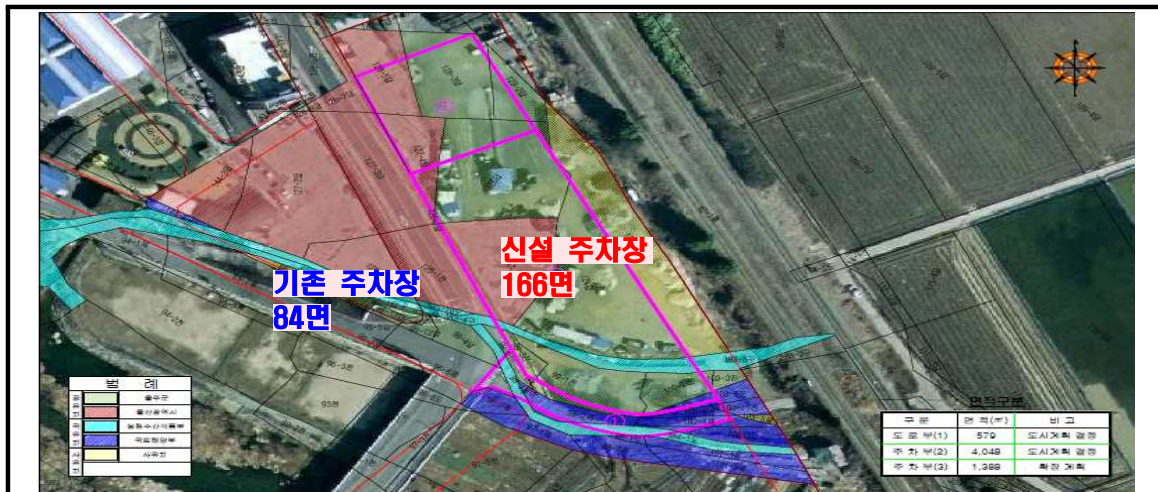
-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 관련사진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조성>



<덕신1차시장 아케이드 설치>



7

작수천 명소화(수변야영장)사업

목 적

작수천의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
- 위 치 : 상북면 등억리 18-2번지 일원
- 규 모 : 44,480m²
- 총사업비 : 7,27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910, 군비 4,360)
- 사업내용 : 캠핑시설 45면(오토캠핑장 20면, 숲속캠핑장 25면)
주차장 101면, 편의시설 3개소, 광장 1,590m²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0. 3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 2012. 12 : 실시설계 완료
- 2013. 2 : 2013년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선정(문체부)
- 2013. 3 :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 2013. 4 :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013. 7 : 사유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 2013. 8 : 공사착공
- 2014. 12 : 준공 및 운영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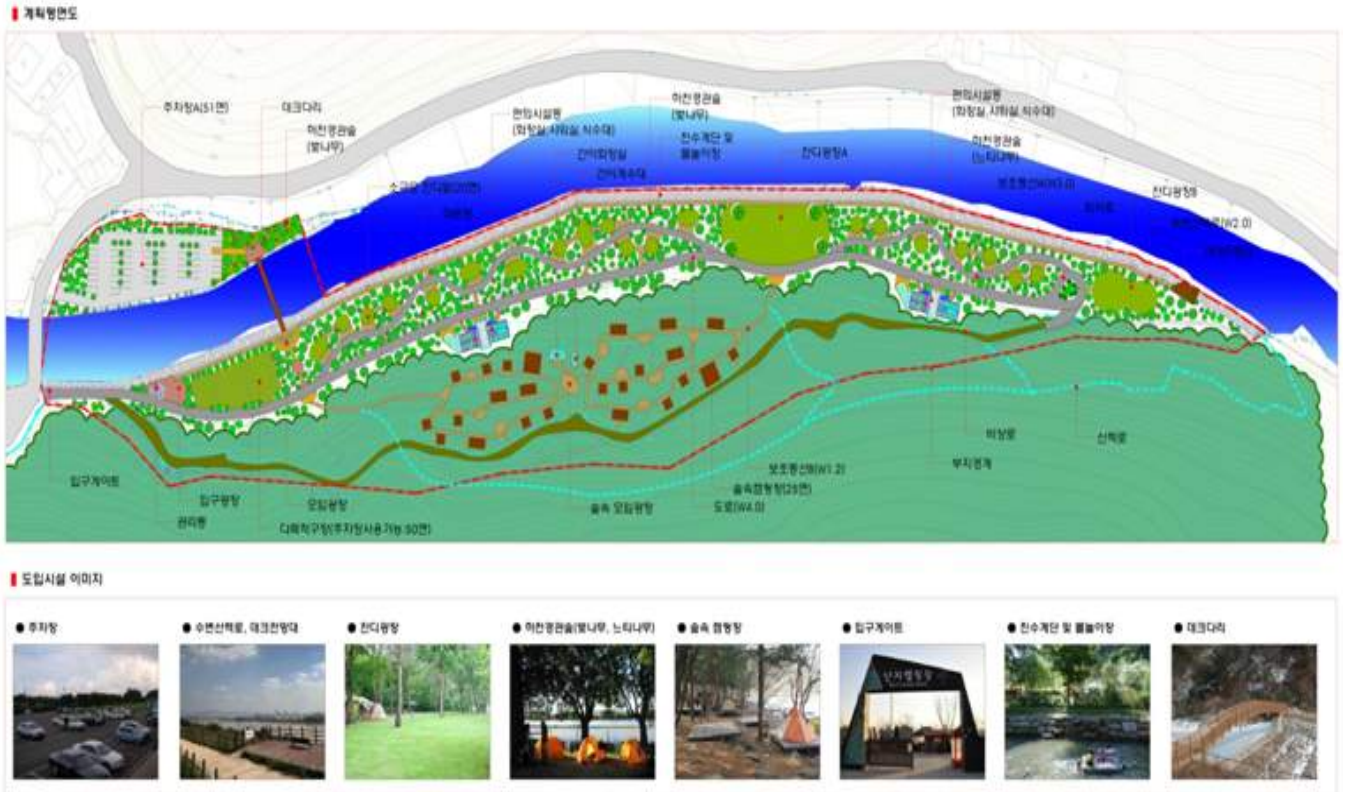
-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관련사진

위 치 도



조성 계획도



현장 사진



8

태화강 생태관 건립

목 적

태화강을 연결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어메니티 공간의 콘텐츠 사업으로 생태체험 학습의 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09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975m²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군비 8,250)
- 사업내용 : 전시시설, 생태체험장, 지역특산물 홍보관, 배양장,
부화장 등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2.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3. : 추진상황 주민 설명회 개최
- 2012. 5. : 소도읍육성사업계획변경 승인(행정안전부)
- 2012. 8. : 기본설계 용역완료
- 2012. 10.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군)

■ 향후 추진계획

- 2013. 9. :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
- 2013. ~ 2014. : 건축공사
- ※ GB관리계획 고시 후 설계도서 납품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연어 및 태화강의 어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 보존으로 학습 및 관광자원화, 지역특산물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사진



9

울주범서도서관 건립

목 적

복합문화 공간의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연과 문화가 어울려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3.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53-1번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815.69㎡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3,000, 군비 13,000)
-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나눔문화교육실, 문화강좌실 등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10. 6. : 건축설계 공모 및 당선작 결정
- 2011. 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11. 10. : 공사착공
- 2012. 10. :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2. 10 : 도서관 명칭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2013.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독서환경 제공으로 정신문화 역량 강화

□ 관련사진



해안디자인개선사업

목 적

천혜의 해안을 자랑하는 진하해수욕장 주변을 아름답고 쾌적한 해안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3
- 위 치 : 온산읍 강양리 해안 ~ 서생면 간절곶 공원(4.5km)
- 규 모 :
- 총사업비 : 26,810백만원(국비3,600, 시비1,800, 군비21,410)
- 사업내용
 - 1차사업 : 중심가로경관개선, 1구간 해안산책로조성(명선교~대바위공원), 명선도경관조명설치
 - 2차사업 : 공영주차장(A=16,193m²), 수변공원43,005m²(대바위공원 11,343m², 솔개공원14,312m², 송정공원17,350m²), 2구간 해안산책로조성 (대바위공원~간절곶등대)

□ '12년까지 추진실적

- 2009. 2. 2. :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9. 9. 10. : 마스터플랜 수립
- 2011. 2. 20. : 1차사업 준공
 - ※ 중심가로경관개선공사, 해안산책로조성공사, 명선도 경관조명설치공사
- 2011. 4. 30. : 해안디자인개선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준공
- 2012. 6. 19. : 진하공영주차장 준공
- 2012. 8. 07. : 수변공원(대바위, 솔개, 송정)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3. 8. : 수변공원 준공
- 2013. 12.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아름답고 쾌적한 해안경관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해안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정주의식 고취와 지자체 브랜드 제고로 자치경쟁력 강화

□ 관련사진

중심가로 경관개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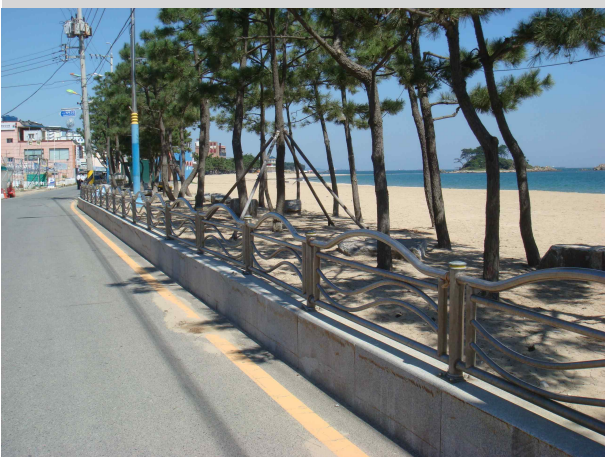


공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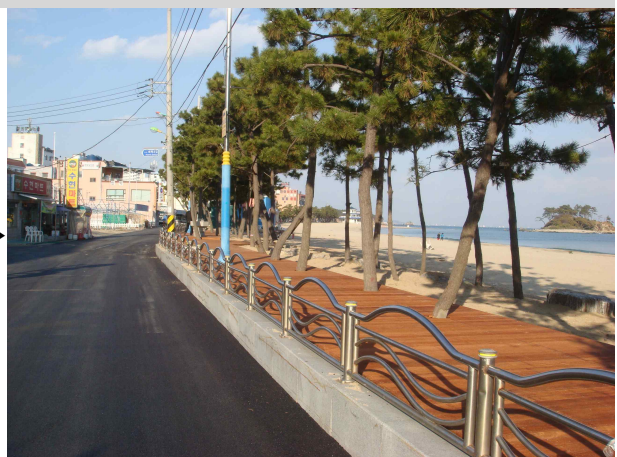


공사후

해안산책로 조성공사(1차)



공사전



공사후

명선도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전



공사후

진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사전



공사후

수변공원 조성공사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사업계획도



별첨 자료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 출연 · 출자금 세부내역
- ◆ 개별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별지1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단위: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총 계 1518건				343,748
1월	소계 85건			20,573
	기획예산실	2012 지자체 합동평가 순회교육 강사 및 관계자 간담회 등	2	408
	총무과	간절곶 해맞이행사 평가분석 만찬간담회 등	30	10,739
	회계정보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자 다과구입 등	3	516
	세무과	2011년 출납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2	435
	민원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등	2	590
	문화관광과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 등	2	580
	지역경제과	설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관련 만찬간담회 등	9	1,641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간담회 등	2	576
	농산과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위원 만찬 제공	1	195
	축수산과	FTA체결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4	668
	환경관리과	2012년 간절곶 해맞이 환경정비 참석자 오찬 제공 등	3	661
	위생과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간담회 경비 지급 등	2	186
	건설방재과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과의 간담회 등	8	1,476
	도로교통과	과적단속 및 제한차량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1	66
	건축과	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와의 간담회	1	84
	정책사업과	작은도서관 어린이 과학캠프 운영 간담회 등	5	353
	동해안권 추진과	해안디자인 개선사업관련 업무협의 등	2	139
	보건소	2012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 협약관련 간담회 등	3	615
의회사무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연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등	3	644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2월	소계 109건			26,900
	기획예산실	신규시책 발굴 관계자 간담회 등	5	784
	총무과	군민의날 기념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 등	34	10,866
	회계정보과	역세권 주변 환경정비 현장확인 및 업무협의	1	190
	세무과	체납세 징수할당제 실시에 따른 간담회 등	3	435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수행자 간담회 등	3	1,079
	문화관광과	2012 울주 진하 달맞이 행사 개최 추진 관계자 간담회 등	5	1,033
	지역경제과	2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참여자 만찬 간담회 등	16	3,081
	생활지원과	울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면접 심사관 오찬제공	1	100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급여 지도점검자 오찬제공 등	3	350
	농산과	농림사업 심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1	210
	축수산과	주요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2	326
	환경관리과	상북 양등마을 간이생태통로 설치 참여자 오찬 제공 경비지급	1	100
	위생과	위생업무 협조관련 오찬경비지급	1	41
	건설방재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민간담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5	743
	도로교통과	겨울철 설해 야간 제설작업 실시에 따른 식대 지급 등	4	643
	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경비지급	2	581
	건축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오찬제공 등	4	1,226
	산림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업무협의 등	2	686
	정책사업과	국제고 설립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3	1,335
	동해안권 추진과	울산컵PWA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업무협의 등	4	838
	보건소	2012년도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 만찬 제공 등	7	2,009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청취관련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2	244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3월	소계 114건			23,521
	기획예산실	통계조사 협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6	1,375
	총무과	3.1절 태극기달기 홍보점검관계자 오찬제공 등	45	10,960
	회계정보과	2012 회계연도 결산업무교육 참석자 만찬 제공	1	330
	세무과	울주군 금고 도서기증 관련 간담회 개최	1	90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위원회 간담회에 따른 중식 제공 등	3	906
	문화관광과	울산옹기축제 공모프로그램 심의회 참석자 오찬제공 등	4	730
	지역경제과	드림스타트 아동폭력 예방교육 관련 만찬 간담회 등	9	1,804
	생활지원과	2012년 상반기 읍면 가정도우미 간담회	1	468
	사회복지과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	250
	축수산과	2012년 청보리 등 조사료 증산을 위한 업무간담회 등	2	345
	환경관리과	그린시티 추진관련 환경부 관계자 만찬제공 경비 지급	1	208
	위생과	음식문화개선사업관련 오찬경비 지급	1	110
	건설방재과	천상 노점상 정비에 따른 관계자 오찬 제공 등	6	1,070
	도로교통과	기초질서지키기 등 홍보캠페인 참석자 만찬 제공 등	3	624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참석자 중식제공	1	300
	건축과	2012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후 간담회 등	2	283
	산림공원과	하늘억새길 조성사업 현장 답사 급식 제공 등	4	612
	정책사업과	태화강생태관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오찬 제공 등	7	747
	동해안권 추진과	경관디자인종합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업무관계자오찬제공 등	2	140
	보건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 지급	8	1,670
	의회사무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관련 간담회개최	6	499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4	소계 111건			24,324
	기획예산실	국가예산 확보 관련 업무 협의 만찬 제공 등	5	1,075
	총무과	부재자투표소 운영 등 선거업무 다과 구입 등	46	12,226
	회계정보과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 오찬 제공 등	3	371
	세무과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3	363
	문화관광과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등	5	1,040
	지역경제과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기간운영 관련 간담회 등	10	1,620
	생활지원과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업무협의	1	100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 간담회 등	2	310
	축수산과	경관단지 업무이관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	1	360
	환경관리과	중고가구, 가전제품 무상지원 간담회 등	3	677
	위생과	식품안전 및 영양캠프 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	2	173
	건설방재과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7	1,787
	도로교통과	의회 현장방문에 따른 식사제공	1	45
	건축과	2012년 상반기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에 따른 중식 제공	1	91
	산림공원과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답사 급식제공	1	138
	정책사업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학교 설명회 다과구입 등	8	1,696
	동해안권추진과	해양레포츠체험교실 업무추진협의 등	2	231
	보건소	국가 암검진 간담회 등	5	1,328
	의회사무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대한 군정질문 관련 간담회 개최 등	5	693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5	소계 137건			28,922
	기획예산실	추경예산편성관련 현장방문에 따른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4	876
	총무과	외국인주민 화합의한마당 잔치 참가독려를 위한 간담회 등	49	14,174
	회계정보과	의회 트위터, 블로그 교육에 따른 참석자 오찬 제공	1	105
	세무과	2012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2	144
	민원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등 구입	1	129
	문화관광과	언양읍 게이트볼장 사용관련 업무협의 등	8	1,100
	지역경제과	언양시장 상인대학 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	8	1,318
	생활지원과	방문형서비스 관련 기관 간담회	1	210
	사회복지과	다문화센터 이전개소 등 관계자 급식비 지급 등	4	361
	축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불락,전복방류)에 따른 업무협의 등	2	695
	환경관리과	자율점검업소 간담회 참석자 오찬 경비 지급	1	460
	위생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간담회 등	6	689
	건설방재과	재난안전네트워크 간담회 경비 지급 등	11	1,832
	도로교통과	겨울철 설해 야간 제설작업 실시에 따른 식대 지급 등	3	770
	도시과	'12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현장평가단 석식 제공	1	480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주민간담회 실시에 따른 중식 제공 등	3	289
	산림공원과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격려 급식 제공 등	3	732
	정책사업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회원 간담회 등	10	1,788
	동해안권 추진과	진하해양레포츠클러스터 조성 업무추진 등	4	391
	보건소	남창용기종기장터건강홍보관 오찬경비 지급 등	8	1,440
	의회사무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및 의사진행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7	939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6	소계 116건			22,120
	기획예산실	언양종합상가시장관련 사태파악을 간담회 등	3	717
	총무과	중소기업해외판로개척을위한해외방문결과홍보 간담회개최 등	32	8,562
	회계정보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관련 참석자 오찬제공	2	241
	세무과	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 심의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3	184
	문화관광과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선발전 관계자 업무협의 등	12	1,520
	지역경제과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간담회 등	13	1,882
	생활지원과	방문형서비스 관련기관 간담회 참석자 석식비 지급	1	225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임원간담회	1	76
	농산과	농작물 한해대책 현장점검에 따른 참석자 오찬 경비 지급 등	2	602
	축수산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관련 공수의 업무 간담회 개최 등	6	757
	환경관리과	12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만찬제공 경비 지급 등	2	556
	위생과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관계자 오찬경비 지급 등	3	289
	건설방재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10	1,612
	도로교통과	토지보상협의를 따른 중식제공	1	48
	도시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중식제공	1	480
	건축과	2012년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따른 중식 제공	1	55
	산림공원과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현장점검 오찬제공	1	234
	정책사업과	울주 RCE 지속가능학교 연구사업 관계자 오찬 제공 등	9	2,309
	동해안권 추진과	진하 공영주차장 준공식 업무추진협의 등	2	92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간담회 오찬 제공 등	4	562
	의회사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련 간담회 등	7	1,116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7	소계 148건			34,769
	기획예산실	결산심사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4	731
	총무과	이동군수실의성공적운영을위한관계자만찬간담	46	14,379
	회계정보과	정보지식인대회 참가자 오찬 제공	2	454
	세무과	7월 재산세 납부홍보 및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관련 간담회	5	710
	민원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류 등 구입	1	130
	문화관광과	울주천전리각석 보존관리방안 최종보고회 현장 방문 및 오찬제공	11	2,773
	지역경제과	하계 행락철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13	2,428
	생활지원과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종합사회복지관)관계자 오찬제공	2	289
	사회복지과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3	389
	농산과	2012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하계착수 이행점검에 따른 참석자 오찬경비 지급	2	167
	축수산과	하반기 소 값 하락 예상에 따른 한우관련단체 간담회	2	680
	환경관리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 방문에 따른 오찬 제공	2	631
	위생과	원스푸드실천업소영업주 간담회 오찬경비 지급	1	460
	건설방재과	여름철 재난관리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12	2,501
	도로교통과	행락철 유원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계획에 따른 간담회	5	535
	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경비지급	6	914
	건축과	간판개선시범사업 정비구역 지정 회의개최에 따른 중식 제공	4	1,017
	정책사업과	울주RCE 분과위원 여수엑스포 관계자 간담회	9	1,491
	동해안권추진과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업무추진협의관계자오찬 제공	7	1,718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면접 및 간담회	6	1,499
	의회사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관련 간담회	5	872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8	소계 105건			23,919
	기획예산실	공약사항 추진관련 점검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3	363
	총무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협의에 따른 오찬간담회 등	39	13,204
	회계정보과	청사관리 업무 협의 등	2	508
	세무과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6	883
	문화관광과	오영수문학관 관계자 오찬	1	36
	지역경제과	울주명품 특산물 직거래장터 관련 간담회 등	8	1,540
	사회복지과	행안부 경로당 안전점검과 관련한 오찬 간담회 등	3	383
	농산과	농어촌 테마공원 내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자 업무협의	1	280
	축수산과	봉계 경관단지 가을꽃 개화기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등	3	1,070
	환경관리과	2012 함양산삼축제 관련 오찬 간담회	1	176
	위생과	음식문화개선사업 간담회 등	3	456
	건설방재과	봉계 복안천 가동보 설치관련 현장점검 및 주민 간담회 등	5	783
	도시과	민원사항(한국특수화물 개발행위허가관련) 현장 점검반 중식제공	1	39
	건축과	간판정비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관계자 석식 제공	1	261
	정책사업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지역관 운영 관계자 오찬 제공 등	8	974
	동해안권 추진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업무추진협의관계자 오찬 제공 등	7	653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계획 회의 등	7	1,416
	의회사무과	홈페이지 개편 관련 간담회 등	6	894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9	소계 134건			26,597
	기획예산실	명예군민감사관 간담회 등	3	639
	총무과	군수기국학기공대회 및 수영대회 추진관계자만찬간담회 등	41	12,271
	회계정보과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업무협의	1	468
	세무과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	4	409
	문화관광과	제4회 대운문학회 시낭송회 추진 관계자 석식제공 등	6	436
	지역경제과	추석명절 물가안정캠페인 준비 시장 관계자 간담회 등	19	1,867
	생활지원과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2	381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대표 간담회 등	2	152
	농산과	화훼수출 관련 업무추진 협의 등	3	909
	축수산과	햇토우랑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행사 관계자 협의회 등	2	258
	환경관리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관련	1	270
	위생과	2012 웰빙라이프 음식체험전참여업소 오찬지급 등	2	120
	건설방재과	가을 행락철 및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반 오찬 제공 등	11	1,229
	도로교통과	남천주차장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현장방문 등	2	252
	건축과	간판개선시범사업 디자인(안)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중식제공 등	3	447
	산림공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 점검 방문 등	4	532
	정책사업과	명문고 육성 계획 수립 위한 간담회 등	13	2,488
	동해안권추진과	전선 지중화사업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1	425
	보건소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 만찬제공 등	10	2,367
	의회사무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방향 관련 간담회 등	4	677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10	소계 138건			30,386
	기획예산실	2012년 기초회계 집행실태 감사관련 업무협의 등	3	504
	총무과	연양향교 추계석전대제행사 관계자 오찬간담회 등	48	11,770
	회계정보과	2012년 기초회계 집행실태 감사 업무협의	1	314
	세무과	취득세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를 위한 간담회 등	6	616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행자와 간담회 등	2	723
	문화관광과	K리그 울주군데이 내빈용 다과구입 등	4	612
	지역경제과	국제기술협력교류에 따른 경비 지급 등	12	4,515
	생활지원과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홍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석식 제공 등	10	1,317
	사회복지과	어린이집대표 간담회 개최 등	2	192
	축수산과	조사료 생산 확대 관계자 간담회 등	3	1,184
	환경관리과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간담회 등	2	368
	건설방재과	태풍 산바 피해복구관련 참석자 식사 제공 등	13	2,946
	도로교통과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	1	170
	도시과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현장 개발행위 허가관련 회의 등	4	1,004
	건축과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관계자 오찬간담회 등	2	134
	산림공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장 현장시찰 참석자 오찬 제공 등	3	930
	정책사업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학교 운영관련 간담회 및 오찬 제공 등	7	1,159
	동해안권 추진과	해양레포츠센터건립용역 관계자 업무추진협의 등	3	427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관계자 간담회 등	6	913
	의회사무과	태풍 피해상황 조사 및 석식제공 등	6	588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11	소계 137건			32,602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8	1,369
	총무과	지역 여론동향 점검을 위한 관계자 오찬 간담회 등	41	11,731
	회계정보과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교차점검팀 오찬 제공 등	4	1,230
	세무과	2013년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위한 간담회 등	5	468
	문화관광과	EBS 한국기행-울주군편 촬영관련 업무협의 등	3	121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관련 울주군 중소기업 협의회와의 간담회 등	9	933
	생활지원과	2012년 울주군 자원봉사자대회 준비 관련 간담회 등	3	1,134
	사회복지과	연말김장지원행사 회의개최 등	5	1,007
	농산과	과수발전협의회 간담회 등	2	670
	축수산과	봉계경관단지 사료작물 파종 관계자 간담회 등	2	720
	환경관리과	나눔장터행사 및 순환자원거래소 홍보 관련 간담회 등	2	256
	위생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4	671
	건설방재과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간담회 등	11	3,321
	도로교통과	겨울철 사전대비 도로보수원 간담회 등	2	700
	도시과	4/4분기 개발제한구역관리 정기(합동)점검반 중식 제공 등	3	925
	건축과	간판개선사업 홍보동영상 제작관련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중식제공 등	3	993
	산림공원과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 오찬 등	5	1,518
	정책사업과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관계자 간담회 등	9	2,188
	동해안권 추진과	해양레포츠센터용역착수보고회후관계자간담회	1	350
	보건소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원 확인조사 관계자 오찬 제공 등	7	1,187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안건 관련 간담회 등	8	1,110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12	소계 184건			49,115
	기획예산실	당초예산 계수조정 관련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3	3,730
	총무과	투표구설치등선거업무점검후지역현안논의를위한관계자오찬간담회 등	59	19,330
	회계정보과	두서면 청사 실시설계에 따른 업무협의 등	3	768
	세무과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5	734
	민원지적과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 등	7	1,936
	문화관광과	2013년 울주군수배 전국중학교 축구 스토프리그 업무협의 등	12	2,460
	지역경제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관련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급 등	10	864
	생활지원과	보훈단체 연말 위안행사 추진 관련 간담회 등	6	1,272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장 간담회개최 등	8	1,450
	농산과	2013년 배 흑성병 약제지원을 위한 관련자 간담회 등	6	2,455
	축수산과	축산관계자 20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간담회 등	2	430
	환경관리과	재활용 그물망 배출 및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등 간담회 등	3	720
	위생과	2013년 공중위생관리 위생수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	2	300
	건설방재과	2012년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방재기상업무 간담회 등	11	3,122
	도로교통과	2013 간절곶 해맞이축제 교통지원대책 간담회 등	6	1,575
	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중식비 지급 등	3	540
	건축과	간절곶 해맞이 행사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중식제공 등	5	620
	산림공원과	간절곶 광장조성사업지 및 해맞이 행사장 점검 참석자 오찬	1	114
	정책사업과	국제고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7	2,040
	동해안권 추진과	해양레포츠센터 용역 업무협의	1	96
	보건소	남부권 사업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간담회 등	5	845
	의회사무과	정례회 운영 관련 간담회 등	19	3,714

별지2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단위: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총 계 266 건				3,760,818	
1월	소계 12건			397,739	
	문화관광과	2012년도 울주군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7	247,935	
	생활지원과	2012년 1/4분기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3	56,794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1	92,51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정기간담회 개최 보조금	1	500	
2월	소계 16건			302,657	
	문화관광과	충의각 제례 행사 보조금 등	3	24,850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4	32,850	
	생활지원과	울주군청년회의소 제93주년 3.1절 기념식 및 언양4.2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 등	5	122,317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1	99,99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제설도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 등	2	2,650	
	산림공원과	가지산 고로쇠 수액 판매 및 홍보행사지원	1	20,000	
3월	소계 41건			617,635	
	총무과	2012년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개혁사업 보조금	1	10,000	
	문화관광과	언양향교 평생교육원 운영비 등	17	225,605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흥興정情 보조금 등	11	149,577	
	생활지원과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현 행사지원 등	3	16,900	

	농산과	제9회 울주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보조금 등	5	144,643
	위생과	2012년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 보조금	1	5,00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새봄맞이 하천정화활동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	910
	정책사업과	2012 울주RCE 분과별 특화사업 보조금 등	2	65,000
4월	소계 13건			174,570
	문화관광과	2012 울주군 기획여행마우처 사업 보조금 등	4	10,11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3	14,102
	생활지원과	특수임무유공자회 호국안보순례 행사비 지원 등	3	44,030
	농산과	농촌체험마을행사 운영비 등	2	105,350
	건설방재과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및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1	970
5월	소계 25건			220,463
	문화관광과	2012 어린이 체능교실 지원 보조금(생활체육캠프교실) 등	7	25,679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4	35,181
	생활지원과	2012년 4개단체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 보조금 등	9	31,100
	농산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 보조금 등	2	100,95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설해대비 취약지 예찰활동 및 제설현장 출동에 따른 보조금	1	2,590
	산림공원과	제12회대운산철쭉제보조금지급	1	5,000
	정책사업과	2012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1	19,963
6월	소계 33건			368,102
	총무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58주년 기념행사 지원 등	4	30,000

	문화관광과	연양향교 충효예절교실 운영비 등	6	94,740
	지역경제과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등	16	112,942
	생활지원과	6.25전쟁 62주년 행사 보조금 등	3	8,900
	사회복지과	2012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보조금	1	13,000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등	2	101,61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조금	1	6,910
7월	소계 17건			195,639
	문화관광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관련 강좌비 보조금 등	2	3,543
	지역경제과	2012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보조금 등	6	21,765
	생활지원과	제48회 월남 참전기념일 및 제15회 만남의 장 보조금 등	6	62,881
	농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보조금 등	2	103,37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교부	1	4,080
8월	소계 18건			311,838
	총무과	제13회 울주군 이장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등	2	47,000
	문화관광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관련 강좌비 보조금 등	5	102,804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월분 보조금 지급	6	49,141
	생활지원과	2012년 8월 울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	900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등	2	102,930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1	4,063
	정책사업과	2012년 독서의 달 행사 보조금	1	5,000

9월	소계 15건			190,771
	문화관광과	연양향교 추계석전대제 제향비 보조금 등	3	5,689
	지역경제과	제14회 온산읍민 및 공단 한마음 축제 보조금 등	7	71,792
	생활지원과	고엽제전우회 오음리 전적지 순례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등	3	8,600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등	2	104,690
10월	소계 23건			374,689
	총무과	녹생생활 선진화운동 실천결의 등반대회 보조금	1	2,000
	문화관광과	여행바우처 지원 대금 지급 건의 등	2	2,349
	지역경제과	201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등	14	121,465
	생활지원과	2012년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운영 지원 등	3	143,791
	농산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보조금 등	2	104,800
	건설방재과	자율방재단 보조금	1	284
11월	소계 19건			220,376
	문화관광과	창표당 임란공신 추모제례 보조금 등	5	22,877
	지역경제과	201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등	8	75,434
	생활지원과	2012년 11월 읍·면·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수당 교부	1	900
	농산과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등	2	106,560
	건설방재과	자율방재단 보조금 등	3	14,605
12월	소계 34건			386,339

	총무과	2012 울산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1	3,500
	문화관광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관련 강좌비 보조금 등	5	17,215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15	128,126
	생활지원과	연말유족 및 연로회원 위안행사 지원 등	6	24,900
	농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보조금 등	3	110,930
	건설방재과	자율방재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	2,196
	산림공원과	2012년 농림사업(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조금	2	99,472

별지3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내역

(단위: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건수	금 액
총 계 91 건					2,704,346
1월	소계 10건				43,000
	총무과	2012년 신년인사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	5,000
	온산읍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온양읍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범서읍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6,000
	웅촌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두동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두서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상북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삼남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삼동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2월	소계 4건				403,000
	문화관광과	2012 울산옹기축제 보조금		2	395,000
	언양읍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청량면	2012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		1	4,000
3월	소계 10건				769,100

	총무과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 운영	1	140,000
	문화관광과	2012 간절곶 전국여자 축구대회 지원	5	544,100
	농산과	2012년 봉계 황우쌀 축제행사 지원	1	30,000
	축수산과	2012 울주 전국바다낚시대회 보조금	2	40,000
	온양읍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 지원	1	15,000
4월	소계 17건			374,000
	문화관광과	제15회 진하 전국바다장거리 낚시대회 운영 등	4	99,000
	사회복지과	2012년 울주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1	25,000
	축수산과	2012년 울주 으뜸한우 선발대회 지원	1	80,000
	온산읍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언양읍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범서읍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20,000
	서생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청량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웅촌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두동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두서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상북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삼남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삼동면	제2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1	15,000

5월	소계 4건			74,500
	총무과	제7회 울주군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대회 행사 지원	1	30,000
	문화관광과	2012 목요열린무대 "공감" 행사 지원 등	2	40,000
	축수산과	제10회 울산광역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1	4,500
6월	소계 7건			177,946
	문화관광과	제15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6	164,946
	사회복지과	제17회 여성주간기념 울주군여성한마음대회 지원	1	13,000
7월	소계 8건			243,901
	문화관광과	2012 선바위 하하페스티벌 보조금 교부 등	7	238,901
	온산읍	제14회 8.15광복 67년 리,향우회별 체육대회 행사 지원	1	5,000
8월	소계 10건			135,500
	문화관광과	영남알프스 울주사랑 서포터즈 보조금	1	82,500
	사회복지과	2012년 보육교직원 소양교육	1	8,000
	언양읍	8.15 광복 기념 제38회 언양읍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범서읍	8.15 광복 기념 제55회 범서읍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10,000
	청량면	8.15 광복 기념 청량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두동면	8.15 광복 기념 제22회 두동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두서면	8.15 광복 기념 두서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상북면	8.15 광복 기념 상북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삼남면	8.15 광복 기념 삼남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삼동면	8.15 광복 기념 삼동면민 친선 체육대회 지원	1	5,000
9월	소계 10건			302,400
	총무과	제4회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1	33,400
	문화관광과	제46회 처용문화제 처용마당 행사 지원	1	10,000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지원	1	10,000
	축수산과	2012년 언양한우불고기축제 지원	1	170,000
	온산읍	제16회 온산읍 경로의 달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6,500
	언양읍	제16회 언양읍 경로의 달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23,000
	온양읍	제22회 온양읍민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	5,000
	온양읍	제16회 온양읍 경로의 달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7,000
	웅촌면	제16회 웅촌면 경로의 달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등	2	17,500
10월	소계 9건			116,000
	범서읍	제16회 범서읍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29,000
	서생면	제13회 서생면민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	2	17,000
	청량면	제16회 청량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5,000
	두동면	제16회 두동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9,000
	두서면	제16회 두서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0,000
	상북면	제16회 상북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4,000

	삼남면	제16회 삼남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16,000
	삼동면	제16회 삼동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1	6,000
12월	소계 2건			65,000
	문화관광과	2013년 울주군수배 전국중학교 축구 스토프 리그 지원	1	60,000
	사회복지과	201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1	5,000

별지4 20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5,322,974		
	일반회계	300,28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주군-울산과학기술대학교 양해각서
	일반회계	15,19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5,000,00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반회계	7,500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별지5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온양 대안 233-32번지 일원 (중2-25호)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박상현(☎229-7734)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으로 주민불편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2011~2013
- 위치 : 온양 대안 233-32번지일원(울산온천인근)
- 시공사 : 풍진종합건설(주), 장진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56m, B=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200백만원(군비 7,200)
- 지금까지 집행액 : 5,805백만원(설계 35, 보상 4,400, 공사 1,350, 측량외 20)
- 향후 소요액 : 0백만원(연도별, 자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11.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02 ~ : 보상추진(토지 48건, 지장물 196건, 보상을 100%)
- '12.10 : 공사발주(1차)
- '13.07 : 공사발주(2차)

☐ 향후계획

- '13.08 : 공사준공(1차)
- '13.12 : 공사준공(2차)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 총사업비 7,200백만원
- 현재 : 총사업비 5,805백만원
- 사유 : 토지보상비 과다 책정

사업명	청량 군도18호선 외1개소 선형 개량공사	담당자	도로과 안재현(☎229-77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도18호선 굴곡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주민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간 : 2012~2014 ○ 위치 : 청량 문죽 833-5일원(농업기술센터 인근) ○ 시공사 : 삼원종합건설(주)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560m, B=8m, 교량가설 L=26.8m, B=1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56백만원(국 1,575, 군비 1,581) ○ 지금까지 집행액 : 3,156백만원(설계 20, 보상 1,310, 공사 1,820, 측량 외 6) ○ 향후 소요액 : 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12.0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08 ~ : 보상추진(토지 28/28건, 지장물 34/34건, 보상을 100%) ○ '13.0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14.05 : 공사준공			

사업명	연양 어음 도시계획도로 (소2-1,8,9호)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안재현(☎229-77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으로 주민불편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2008~2013 ○ 위치 : 연양 어음 일원 ○ 시공사 : 삼송산업개발유한회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765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33백만원(군비 6,733) ○ 지금까지 집행액 : 6,733백만원(설계 30, 보상 5,720, 공사 950, 측량 외 3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08.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9.06 ~ : 보상추진(토지 74/76, 지장물 335/399, 보상율 97%) ○ 2012.04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3.09 : 공사준공			

사업명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사업	담당자	도로과 박상현(☎229-773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로 군민 건강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1~2013 ○ 위치 : 청량 상남 덕하삼거리~서생 진하 진하해수욕장 일원 ○ 시공사 : 광림건설(주)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개설 L=21.03km, B=1.5~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0백만원(국 19, 시 10, 군 10) ○ 지금까지 집행액 : 4,800백만원(국 2,400, 시 1,200 군 1,200) 설계 150, 공사 4,6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05 : 실시설계용역 완료(청량~온산간) ○ 2011.07~ '12.04 : 청량~온산간 1차 자전거도로 공사완료 ○ 2011.08~ '12.04 : 청량~온산간 2차 자전거도로 공사완료 ○ 2012.06 : 실시설계용역 완료(온산~서생간) ○ 2012.09~ '13.07 : 온산~서생간 자전거도로 공사완료 ○ 2013.04 : 실시설계용역 완료(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 2013.07 :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4.01 :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 총사업비 3,900백만원, 사업규모:자전거도로개설 L=14km, B=3m ○ 현재 : 총사업비 4,800백만원, 사업규모:자전거도로개설 L=21.03km, B=1.5~3m → 사유 :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사업명	울주선바위도서관 건립공사	담당자	미래시설과 이은아 (☎229-78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머물고 싶은 울주 대표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 공간의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연과 문화가 어울려 하나되는 “소통의 장”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09~2013 ○ 위치 : 범서읍 구영리 753-1번지일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815.6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3,000, 군비 13,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2,800백만원 - 2012년 : 12,800백만원 - 2013년 : 2,438백만원 ○ 향후 소요액 : 4,762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09. 4.21 :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심사(조건부-국·시비 확보) ○ 2010. 6.29 : 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설계용역 계약 ○ 2011. 5.23 : 편입부지 손실보상 완료 ○ 2011. 10.14 : 공사착공(건축) ○ 2012. 8.10 :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2. 10.24 : 도서관 명칭 확정 □ 향후계획 ○ 2013. 12. : 공사준공			

사업명	서부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담당자	미래시설과 이은아 (☎229-78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복지관을 증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2 ~ 2013 ○ 위치 : 삼남면 교동리 108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556.54㎡(증 940.8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40백만원(군비 2,040) ○ 지금까지 집행액 : 439백만원 - 2012 : 364백만원(부지매입비 등) - 2013 : 75백만원(실시설계 등) ○ 향후 소요액 : 1,601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3. 5. : 설계용역 완료 ○ 2013. 7. 10 : 건축협의를 ○ 2012. 7. 15 : 계약심사 요청 □ 향후계획 ○ 2013. 8. : 공사착공 ○ 2013. 12.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비 변경 : 당초 2,040백만원, 변경 2,910백만원 ○ 변경사유 : 건물 취득비(55%) 증가			

사업명	두서면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공사	담당자	미래시설과 이은아 (☎229-78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0 ~ 2014 ○ 위치 : 두서면 인보리 28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8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90백만원(군비 5,990) ○ 지금까지 집행액 : 5,190백만원 - 2011 : 900백만원(부지보상 등) - 2012 : 180백만원(설시설계 등) - 2013 : 4,110백만원(공사발주 등) ○ 향후 소요액 : 80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1. : 부지보상 ○ 2012. :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완료 ○ 2013. 6.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13. 7. 1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4. 1. : 도로부지 보상 및 도로공사 ○ 2014. 12. : 공사준공			

사업명	태화강생태관 건립공사	담당자	미래시설과 김준기 (☎229-786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태화강을 연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어메니티 공간의 콘텐츠 사업으로 생태체험 학습의 장 조성 ○ 연어 및 태화강의 어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 보존으로 학습 및 관광자원화, 지역특산물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4.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09-2번지일원 ○ 사업규모 : 전시시설, 생태체험장, 지역특산물 홍보관, 배양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15,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군비 8,250) ○ 지금까지 집행액 : 1,983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2011년: 48백만원(시설비) -2012년: 1,931백만원(시설비) -2013년: 4백만원(시설비) ○ 향후 소요액 :13,017백만원(14년, 시설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2년 1월 : 설계감리착수 ○ 2013년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 향후계획 ○ 2013년 9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년 ~ 2014년 : 건축공사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배양장 및 부양장 관련사업을 생태관사업과 연계추진 (당초11,000백만원→변경15,000백만원)			

사업명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담당자	미래시설과 김준기 (☎229-786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산업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육성 ○ 주민의 체육·문화 창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자긍심이 높은 문화 복지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0.~2013.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연면적6,523㎡, 지하1층/지상3층) 테마공원 조성(36,085㎡, 야외쉼터·산책로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300백만원(국비 5,000, 시비 2,500, 군비 14,800) ○ 지금까지 집행액 : 8,999백만원 - 2010년: 91백만원(시설비) - 2011년: 2,648백만원(시설비) - 2012년: 1,847백만원(시설비) - 2013년: 4,413백만원(시설비·감리비) ○ 향후 소요액 : 16,301백만원(13~14년, 시설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2013년 1월 : 부지보상완료 ○ 2013년 7월 : 1층골조공사 □ 향후계획 ○ 2014년 3월 : 공사준공(공기단축시, 2013.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수영장 및 체육관 규모가 주민들의 요구로 당초 보다 확대됨 (당초 20,300백만원→변경 22,300백만원)			

사업명	언양소도읍육성사업	담당자	미래시설과 이정채 (☎229-879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역사문화가 살아 쉼쉬는 언양의 특성과 고속철도 역세권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도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08 ~ 2013 ○ 위치 : 울주군 언양읍 일원 ○ 사업규모 : 언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남천친수공간 조성사업 언양읍성 복원 활성화 사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5,000, 시비 2,500, 군비 4,500) ○ 지금까지 집행액 : 6,535백만원 - 2010 : 3,618백만원(재래시장 및 남천친수공간) - 2011 ~ 2013 : 2,917백만원(언양읍성 복원활성화 사업)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0. 6. 19 : 언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준공 ○ 2010. 6. 25 : 남천친수공간 조성사업 ○ 2011. : 보상협의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 2012. : 언양읍성 남문 복원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13. 8 : 언양읍성 남문 복원사업 준공 ○ 2013. 9 ~ : 언양읍성 남문지 추가사업 추진			

사업명	범서 구영체육시설 조성사업	담당자	미래시설과 손태환 (☎229-878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세수증대 ☐ 사업개요 ○ 기간 : 2007~2015 ○ 위치 : 범서읍 구영리 210-1, 2번지 ○ 사업규모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67백만원(기금 2,900, 군비 9,167) ○ 지금까지 집행액 : 2,468백만원 - 2012년 : 225백만원(실시설계비, 명시이월), 입지시설 결정 지연에 따라 용역 지연 - 2013년 : 2,243백만원(토지매입비) ○ 향후 소요액 : 9,599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1. 10. 6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울산광역시) ○ 2013. 5. 6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매입 완료 ○ 2013. 6. 5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9억원) ☐ 향후계획 ○ 2013. 8 : 실시설계용역 시행(12월 완료 예정) ○ 2014. : 공사착공			

사업명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미래시설과 손태환 (☎229-878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세수증대 □ 사업개요 ○ 기간 : 2002 ~ 2017 ○ 위치 : 삼남면 교동리 산86-1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족구장, 광장, 가족공원, 휴식공간, 주차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국비 12,000, 시비 12,000, 군비 26,000) ○ 지금까지 집행액 : 3,100백만원 - 2008 : 1,300백만원(조성계획 및 3대영향평가 용역 등) - 2011 : 1,800백만원(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등) ○ 향후 소요액 : 46,90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09. 10. 20 :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 ○ 2011. 8. 1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 공원조성계획 심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향후계획 ○ 2013. 8 :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완료 ○ 2013. 9 ~ 12 : 설계VE 및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협의 ○ 2014. :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 2015. : 공사착공			

사업명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해양정책과 장혜영 (☎229-7443)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양레포츠 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로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족캠핑장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산업 육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2~2016 ○ 위치 : 서생면 진하리 59-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5,200㎡(해양레포츠센터 2,000㎡ 가족캠핑장 60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0백만원(국비 2,960, 군비 23,040)
- 지금까지 집행액 : 123백만원(군비)
- 향후 소요액 : 25,877백만원(국비 2,960, 군비 22,91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2.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완료
- 2013. 5.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013. 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 향후계획

- 2014.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 2014. 2. : 실시설계 용역시행

□ 사업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명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오토·가족캠핑장 조성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위 치	서생면 진하리 일원	서생면 진하리 59-4번지 일원	"
사업비	센 터 : 10,000 캠핑장 : 19,000	26,000	"

재정공시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u>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u> <u>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예산안을 <u>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u> <u>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u> <u>하여야 한다.</u>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 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 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 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u>3일 이내에</u>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 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u>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u>를 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u>제1차 정례회</u>는 매년 6월·7월 중에, <u>제2차 정례회</u>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u>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u>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 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⑤안전행정부장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8]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4(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말한다.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본조신설 2011.9.6]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6> 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9.6, 2013.3.23>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6>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6> 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6, 2013.3.23>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제목개정 2011.9.6]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 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용어해설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産)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익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產)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보전금 (財政補填金)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 (統合財政收支)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 (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

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性に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 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사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 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예산대비 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 총규모} / \text{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정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보전금 (財政補填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 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ext{여기서, 자주재원}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

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3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 · 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과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과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

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